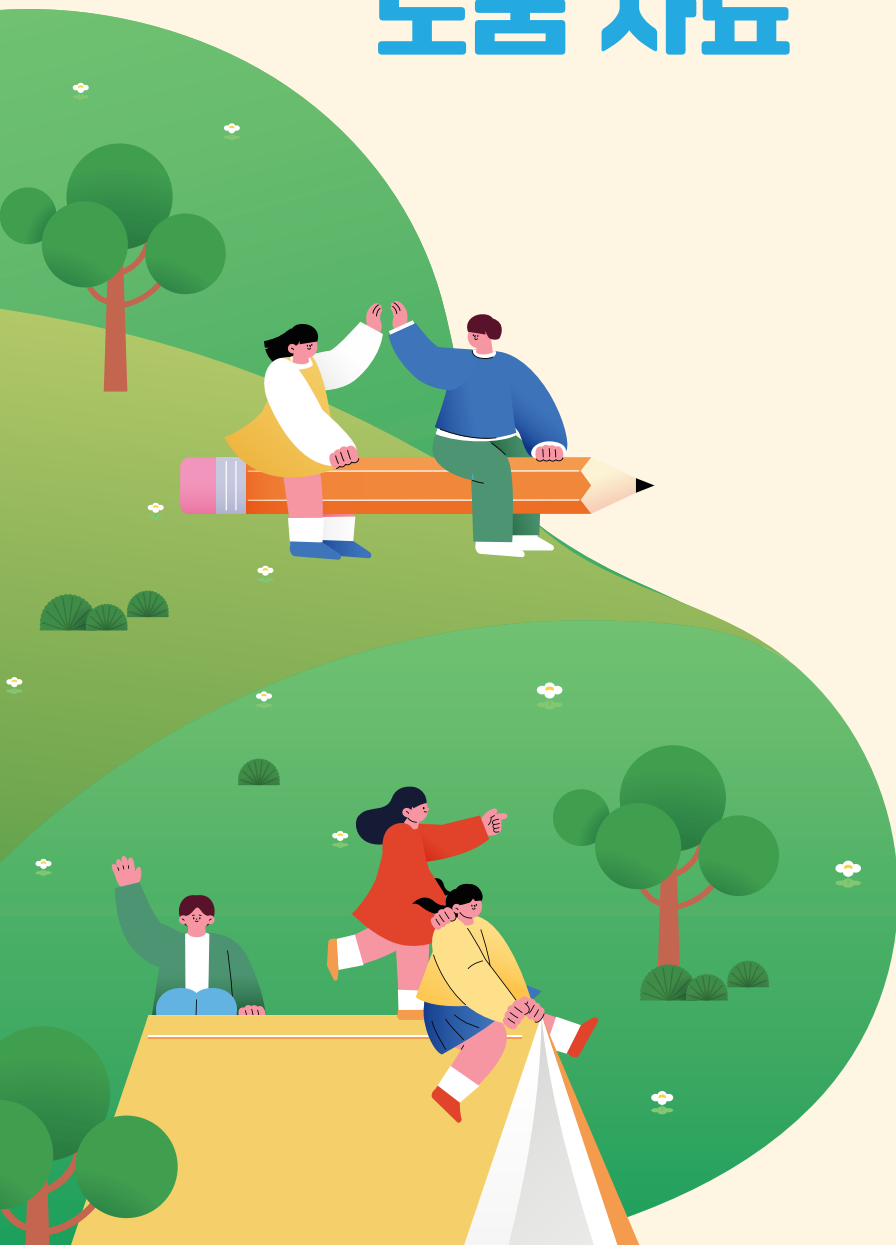


# 한 권에 담은 통합교육 실행 도움 자료



## 통합교육 실행 도움 자료의 성격

-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만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소속된 학교와 학급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자료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학교 통합교육 담당자의 업무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도움 자료입니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통합교육 업무를 수행하실 때 각종 계획서와 양식 등의 예시자료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특수학급 설치교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등 일부 자료는 별도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각각의 계획을 포함한 특수학급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도움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별도로 구성한 것이니 학교 상황에 맞추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학교현장의 계획과 양식을 수합하여 재구성한 예시자료이며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교육청 최신 운영계획과 관련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례

▶ <u>특수교육 관련 주요 개념</u> .....	1
▶ <u>연간 통합교육 업무 흐름도</u> .....	3
1. <u>통합교육계획</u> .....	5
1-1. <u>특수학급 운영계획</u> .....	17
2. <u>개별화교육계획</u> .....	43
3. <u>장애공감문화 활성화</u> .....	71
4. <u>현장체험학습</u> .....	83
5. <u>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u> .....	97
6. <u>장애학생 평가조정</u> .....	119
7. <u>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 계획</u> .....	131
8. <u>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u> .....	159
9. <u>장애학생 인권보호</u> .....	169
10. <u>특수교육대상유아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u> .....	175
[부록1] <u>공통 모두를 위한 학교교육계획 수립</u> .....	181
[부록2] <u>공통 통합교육 자율 점검 체크리스트</u> .....	184
[부록3] <u>통합교육 관련 법률</u> .....	188



# 특수교육 관련 주요 개념

※ 특수교육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b>특수교육</b>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b>특수교육 관련서비스</b>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예: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b>특수교육대상자</b>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b>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유형</b>	일반학교	일반학급    모든 교육과정을 통합학급에서 교육받음(완전통합) 특수학급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서 교육받음
	특수학교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음	
<b>특수학교</b>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b>특수학급</b>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설치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내의 학급	
<b>통합학급</b>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	
<b>통합교육</b>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b>개별화교육계획 (IEP)</b>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IEP(개별화교육계획) :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b>순회교육</b>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육 실시	
<b>특수교육 운영위원회</b>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주요 심의 사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p><b>의무교육</b></p>	<p>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p>																																																												
<p><b>교원의 자질향상</b></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 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p>																																																												
<p><b>특수교육지원센터</b></p>	<p>① 역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서울형 순회교육 등 통합교육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435 1200 1417 1742"> <thead> <tr> <th>순</th> <th>센터명</th> <th>위치</th> <th>전화번호</th> <th>관할지역</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td> <td>서울묵동초등학교</td> <td>433-4327</td> <td>동대문구, 중랑구</td> </tr> <tr> <td>2</td> <td>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td> <td>서울응암초등학교</td> <td>715-0953</td> <td>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td> </tr> <tr> <td>3</td> <td>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td> <td>서울영일초등학교</td> <td>856-2416</td> <td>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td> </tr> <tr> <td>4</td> <td>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td> <td>신상중학교</td> <td>956-1039</td> <td>노원구, 도봉구</td> </tr> <tr> <td>5</td> <td>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td> <td>서울청구초등학교</td> <td>2027-7900</td> <td>종로구, 중구, 용산구</td> </tr> <tr> <td>6</td> <td>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센터</td> <td>서울중대초등학교</td> <td>414-2634</td> <td>송파구, 강동구</td> </tr> <tr> <td>7</td> <td>강서양천특수교육지원센터</td> <td>강서양천꿈미래센터</td> <td>2620-2400</td> <td>강서구, 양천구</td> </tr> <tr> <td>8</td> <td>강남서초특수교육지원센터</td> <td>서울대청초등학교</td> <td>459-1013</td> <td>강남구, 서초구</td> </tr> <tr> <td>9</td> <td>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td> <td>서울문창초등학교</td> <td>833-2895</td> <td>동작구, 관악구</td> </tr> <tr> <td>10</td> <td>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td> <td>서울행당초등학교</td> <td>2292-6411</td> <td>성동구, 광진구</td> </tr> <tr> <td>11</td> <td>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td> <td>송곡중학교</td> <td>911-1078</td> <td>강북구, 성북구</td> </tr> </tbody> </table>	순	센터명	위치	전화번호	관할지역	1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묵동초등학교	433-4327	동대문구, 중랑구	2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응암초등학교	715-0953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3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영일초등학교	856-2416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4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신상중학교	956-1039	노원구, 도봉구	5	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청구초등학교	2027-7900	종로구, 중구, 용산구	6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중대초등학교	414-2634	송파구, 강동구	7	강서양천특수교육지원센터	강서양천꿈미래센터	2620-2400	강서구, 양천구	8	강남서초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대청초등학교	459-1013	강남구, 서초구	9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문창초등학교	833-2895	동작구, 관악구	10	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행당초등학교	2292-6411	성동구, 광진구	11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송곡중학교	911-1078	강북구, 성북구
순	센터명	위치	전화번호	관할지역																																																									
1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묵동초등학교	433-4327	동대문구, 중랑구																																																									
2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응암초등학교	715-0953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3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영일초등학교	856-2416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4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신상중학교	956-1039	노원구, 도봉구																																																									
5	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청구초등학교	2027-7900	종로구, 중구, 용산구																																																									
6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중대초등학교	414-2634	송파구, 강동구																																																									
7	강서양천특수교육지원센터	강서양천꿈미래센터	2620-2400	강서구, 양천구																																																									
8	강남서초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대청초등학교	459-1013	강남구, 서초구																																																									
9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문창초등학교	833-2895	동작구, 관악구																																																									
10	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행당초등학교	2292-6411	성동구, 광진구																																																									
11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송곡중학교	911-1078	강북구, 성북구																																																									
<p><b>교육과정의 운영</b></p>	<p>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b>협력교수</b></p>	<p>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통합학급 내 모든 학생의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업을 함께 계획하고 가르치는 팀워크 중심의 교육 모델</p>																																																												



# 연간 통합교육 업무 흐름도



시기	구분	내용
2월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학급 배치</li> <li>학생 기초정보 수집</li> <li>특수학급 운영 예산 편성</li> <li>지원인력 신청</li> <li>(필요시)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신입생 입학 적응교육</li> <li>(유치원)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시, 통합교육 안내</li> </ul>
3월	교육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교육계획</li> <li>특수학급운영계획</li> <li>(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li> </ul>
	개별화교육계획 (I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li> <li>1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li> <li>1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li> </ul>
	관련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지원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신청</li> <li>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 계획 수립</li> </ul>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교육지원 서울형 순회교육 신청</li> </ul>
	장애이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시) 통합학급 대상 장애이해교육</li> </ul>
	평가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고사, 모의고사 평가조정 방안 마련</li> </ul>
4월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제출 및 특수교육통계자료 제출</li> </ul>
7월	개별화교육계획 (I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학기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및 평가서 배부</li> <li>치료지원제공기록지 개별화교육계획에 첨부</li> </ul>
8월	개별화교육계획 (I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li> <li>2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li> </ul>
9월 ~11월	입.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입.진학설명회 안내</li> <li>유·초·중·고 특수학교 입학에 위한 배치 신청서 작성</li> <li>* 입학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일정은 교육(지원)청의 공문 참고</li> </ul>
12월 ~1월	개별화교육계획 (I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학기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및 평가서 배부</li> <li>치료지원제공기록지 개별화교육계획에 첨부</li> </ul>
	관련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시) 특수교육실무사 신청</li> </ul>
2월	개별화교육계획 (I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급하는 학교로 개별화교육계획 송부</li> </ul>
연중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 연2회 이상</li> <li>교직원,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 연1회 이상</li> <li>특수교육지원인력 연수</li> </ul>
	장애공감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교육</li> </ul>

※ 본 자료에 수록한 업무 중심의 흐름도이며, 학교 상황과 공문을 참고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2026 통합교육 업무 지원  
한 권에 담은 통합교육 실행 도움 자료



1

# • 통합교육계획





# 1. 통합교육계획



## ▶ 선생님들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 및 지원 사항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통합교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래 통합교육계획을 참고하시어 학교 실정에 맞는 단위학교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과정 계획에 포함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

- ①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 ①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Tip

1.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육팀 방문’을 신청하여 통합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시 통합교육계획에 특수학급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통합교육계획을 학교교육과정 안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예시자료

- ◆ [기안문] 통합교육계획
- ◆ [계획서] 통합교육계획





❖ [계획서 예시] 통합교육계획

# 202○학년도 ○○학교 통합교육계획(안)



○○학교

## I 근거

-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 **유치원의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II 목적

-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공존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 학교 구성원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 함양
- 특수교육대상학생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통합교육 제공

## III 방침

-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중심 통합을 지향하고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가 서로 협력하여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 장애공감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
- 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을 실시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학년군의 편제와 시간 혹은 학점 배당을 따르며 장애 정도와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정,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 및 각종 학교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 성교육, 진로교육, 동아리활동, 재난안전훈련, 운동회, 학예회 등)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수·학습 자료,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 각종 교구와 필요한 설비를 제공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 교육활동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통합학급 교사는 학급 학생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도록 인성교육에 힘쓰며 지도한다.

## IV 세부운영계획

### 1.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가. 장애이해교육은 특정 장애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장애공감 감수성 향상, 인식 개선, 다양성 수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예시)

- 교과별 단원(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과 연계한 장애이해교육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 통합학급 내 교육활동 운영 중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장애공감수업 운영을 통한 일상 속 장애이해교육 활동 운영
- 범교과 학습주제 탄력적 편성·운영을 고려한 학교별 자율적 장애공감수업 운영

나.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필요시 학년 초 통합학급 학생들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합학급별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전후로 장애이해교육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행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성과를 제고한다.
- 나.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협의회를 실시한다.
- 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 요구와 특성에 알맞은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다.
- 라.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한다.
- 마.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바. 필요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실시하여 개별화교육 내용을 수정,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사.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팀과 협력할 수 있다. ←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경우

## 3. 교육과정 조정 및 운영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혹은 학점 배당은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학생의 능력, 수준,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가-1.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과정은 통합학급의 누리과정 전개에 따르며, 유아의 특성, 현행 수준, 놀이에 대한 흥미 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본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및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다.
- 다. 학생의 장애 유형과 특성, 개별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활동을 위해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내용을 대체할 경우 생활기능 및 진로와 직업 교육, 현장 실습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라. 질 높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 지도, 진로·직업교육, 생활지도를 위해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수업과 수업 나눔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각 교과목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보편적 학습 설계에 기반하여 모든 학생이 온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개별화·맞춤형 학습을 실시한다.
-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 사.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자문하기 위해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자문사항

각종 학교 행사, 현장체험활동(현장실습 포함) 계획 수립, 시간표 작성, 통합학급 내 장애 학생 지원 방안, 장애이해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실시 관련 사항,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일반 교육 과정의 연계 및 적용 방안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구안과 적용 방안 등

#### 4. 교육활동 평가계획 및 평가 조정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 단위 평가에서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에 따라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기한다.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관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른 평가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 다.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최소 성취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 **고등학교의 경우**

####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보호자,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리자, 행정실장, 담당교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동권을 확보한다.
- 2)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하여 이동권 확보가 어려울 경우, 학교 내 협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 3) 본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0	0	0	0	0	0	0	0	×	0	0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 유무를 확인한다.

- 저시력확대교과서 사전 주문/시각장애이용 점자 교과서 주문 등
- 휠체어 이용 학생 교실 배치, 화장실, 엘리베이터 사용 편의 등

## 나.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 1)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 계획(연수 계획 포함)을 수립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방과후 가정등을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및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 및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한다.
- 3) 개별 학생에 대한 구체적 역할 및 지원 시간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 4) 지원인력 배정 시간은 학생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학부모 간담회 및 상담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한다.
- 5)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법 등 특수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6) 현장체험학습, 생존수영활동, 운동회 및 학예회, 수련활동,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 창의적체험활동 등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예산'을 지원 받아 추가 지원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Tip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장애학생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교육권 확보 및 편의제공을 위한 학교회계 예산편성 권장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향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음
- 출처: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194)

**〈특수교육대상학생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학교별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학교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사용이 원칙
- 학교운영비 편성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
- 교육지원청별 자체 지원학교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 다.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 1)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특성 및 장애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개인별 학습능력 신장을 지원한다.
- 2) 장애학생의 장애로 인한 제약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과제수행 능력과 독립성,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기술 향상, 비장애학생과 함께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교육(지원)청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 학교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한다.

**\*학습보조기**

: 학생이 학습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도구나 물품(의사소통 학습보조기, 감각훈련 학습보조기 등)

**\*보조공학기기**

: 장애학생이 과제나 작업을 수행할 때 재할 및 신체적 불편함을 개선하여 교육과 일상생활에서 장애학생의 기능적인 능력의 개선, 유지, 확대에 필요한 기기나 물품(컴퓨터 보조기기, 이동 보조기기, 자세유지 보조기기,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등)

#### 라. 치료지원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치료지원비를 제공한다.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바탕으로 본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교육적 진단을 통해 치료지원의 제공 여부와 치료영역을 결정한다.



### 3) 치료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 (단, 보건복지부 또는 타 기관 지원을 받는 동일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시각장애 보행훈련, 점자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영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4) 치료지원의 내용(치료영역, 치료기관명, 주당 횟수, 1회 단가, 치료시간 등)은 개별화 교육계획 관련서비스에 기재한다.
- 5) 치료지원 제공기관(치료사)으로부터 받은 학기별 ‘치료지원 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학생의 발달상황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거나 기록지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 마. 통학비 지원(중·고등학교만 해당)

- 1) 실제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 혹은 2km 이내이지만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학생에게 통학비를 지원한다.
  - (통학비 지원 대상 학생 중)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에 대한 통학비도 지원 가능
- 2) 학기 초 학생의 통학거리, 장애유형, 보호자 동행 여부에 따라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통학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3) 통학비는 당해 등교수업 기간의 학생별 실제 등교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 4) 통학비는 매학기 교육지원청에서 신청 후 교부받아 학기별로 지급한다.

## 6. 순회교육(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 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정적인 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통합교육지원 서울형 순회교육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 나. 순회교육은 필수 지원 항목(순회교육팀 방문,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계획 수립 지원)과 선택 지원 항목(교수·학습활동지원, 상담활동,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중로 구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학교의 교육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한다.
- 다.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매주 1~2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가 통합교육을 위한 순회교육을 운영한다.
- 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학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순회교육을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매 학기말 본교에 제공한다.

## 7. 입학 적응 지원(초등학교만 해당)

가. 새로운 환경과 교육과정에 대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의 적응 지원을 위해 입학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입학 적응 프로그램 내용(예시)

순	세부 활동	실시 내용
1	교육과정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소개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li> <li>•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안내</li> </ul>
2	학교 한바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학년 교실, 급식실, 보건실, 화장실, 도서관 등 학교 시설 돌아보기</li> <li>• 교장, 교감선생님과 인사하기</li> </ul>
3	학교생활 맛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에 자신의 이름표가 붙여진 자리 찾아 착석하기</li> <li>• 특수학급 탐색하기</li> </ul>
4	학부모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생활 관련 참고자료 안내</li> </ul>

나. 학교에 대한 정보(학교 소개, 교육과정 운영, 시설물 위치 등)와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한다.

다.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학생의 자리 배치,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배정 등 통합교육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준비한다.

라. 학교관리자, 보건교사, 학교보안관,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 학교 구성원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한다.

마. 전체 신입생 학부모 연수 시 통합교육, 특수학급 등에 대해 함께 안내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V 기대효과

-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실천 문화 확산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또래와 함께 학교생활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조성

2026 통합교육 업무 지원  
한 권에 담은 통합교육 실행 도움 자료



1-1

# • 특수학급 운영계획





# 1-1. 특수학급 운영계획



## ▶ 선생님들께

- 특수학급 운영계획은 통합교육계획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계획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통합교육계획에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가되는 부분만 제시하였습니다.
- 차례는 특수학급 운영계획을 통합교육계획에 포함해서 작성하는 경우와 별도로 작성할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특수학급 운영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 외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표시를 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자료

- ④ 2026 서울특수교육
- ④ 2026 서울유아교육계획
- ④ 2026 서울초등교육
- ④ 2026 서울중등교육
- ④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Tip

1. 통합교육계획에 특수학급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생활교육, 성교육, 안전교육 등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체험학습, 개별화교육, 방과후학교,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등은 통합교육계획(학교교육계획서 포함 가능)이나 특수학급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안내하였습니다.



## 예시자료

- ◆ [차례] 통합교육계획(특수학급 운영계획 미포함 / 특수학급 운영계획 포함)
- ◆ [계획서] 특수학급 운영계획
- ◆ [서식] 특수교육대상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기록부
- ◆ [서식] 또래도우미(좋은친구) 신청서
- ◆ [서식] 또래도우미(좋은친구) 봉사활동 보고서
- ◆ [서식] 또래도우미(좋은친구) 봉사활동 확인서
- ◆ [동의서] 초상권·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차례 예시] 통합교육계획(특수학급 운영계획 미포함)

# 차 례

## I. 통합교육계획의 기저

1. 서울 특수교육 방향 .....	0
2. 본교 교육 방향 .....	0
3. 근거 .....	0
4. 목적 .....	0
5. 방침 .....	0

## II. 통합교육계획

1.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	0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적용 .....	0
3. 교육과정 조정 및 재구성 .....	0
4. 교육활동 평가계획 및 평가조정 .....	0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	
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0
나.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 .....	0
다.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0
라. 치료지원 .....	0
마. 통학비 지원 .....	0
6. 순회교육 .....	0
7. 교직원 연수 .....	0
8. 입학적응지원 .....	0



❖ [차례 예시] **통합교육 운영 계획(특수학급 운영계획 포함)**

# 차례

## I. 통합교육계획의 기저

- 1. 서울 특수교육 방향 ..... 0
- 2. 본교 교육 방향 ..... 0
- 3. 특수학급 현황 ..... 0

## II. 통합교육계획

- 1.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 0
-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 0
- 3. 교육과정 조정 및 재구성 ..... 0
- 4. 교육활동 평가계획 및 평가조정 ..... 0
-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0
  -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활용 ..... 0
  - 다.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0
  - 라. 치료지원 ..... 0
  - 마. 통학비 지원 ..... 0
- 6. 순회교육 ..... 0
- 7. 교직원 연수 ..... 0
- 8. 입학적응지원 ..... 0

## III.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 1.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방침 ..... 0
- 2. 특수학급 시간표 ..... 0
- 3. 교과 지도 계획 ..... 0
- 4. 기본생활교육 ..... 0
- 5.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성·인권교육) ..... 0
- 6.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 0

## IV. 특수학급 운영

- 1. 또래도우미 운영 계획 ..... 0
- 2. 현장체험학습 ..... 0
- 3. 방과후학교 운영 ..... 0
- 4. 특수학급 예산 관리 ..... 0
- 5. 특수학급 운영 평가 ..... 0

❖ [계획서 예시] 통합교육 운영계획안

# 202○학년도 통합교육 운영계획안



○○학교

## I 통합교육계획의 기저

### 1. 특수학급 현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기준일: 202○.3.1.)

학생수			학년별(연령별)				특수학급별				배치 형태별				
남	여	계			계		1	2	3	계	일반학급		특수학급		계

학년(연령)	유형 성별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지체 장애		발달 지체		정서·행동 장애		청각 장애		--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																
2																
3																
4																
5																
6																
계																

(※장애영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분류)

나. 교원 현황

(기준일: 202○.3.1.)

직위	담당학급	성명	성별	교원자격	비고
특수교사					
특수교사					

다. 특수교육지원인력 현황

(기준일: 202○.3.1.)

직위	담당학급	성명	성별	현임교배치	연수이수 (소양교육)	비고 (소지자격 등)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 Ⅲ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 1.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방침

##### 가. 교육과정 운영 방향

- 1) 특수학급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통합학급에서의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 2) 통합학급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적 및 출결, 평가, 상훈 등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작성·관리하고, 특수학급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상담기록부 등 기타 특수학급 운영에 필요한 문서를 별도로 작성·관리한다.
- 3) 통합학급의 현장체험학습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 4)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문화예술 교육 및 교과간 융합교육을 활성화한다.
- 5) 수업방법 개선 및 과정중심 평가를 통한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 나. 교육과정 운영 방침

- 1) (유) 특수학급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을 기초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놀이 주제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 2) (초, 중, 고) 교육과정 해당 학년군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을 따르되,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하여 수업을 운영한다.
- 3) (초, 중, 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통합학급 교육과정을 따르되, 상황에 따라 특수학급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에 맞춘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성교육, 인권교육 등), 안전교육 등을 운영한다.

##### 다. 평가

- 1) (유) 관찰, 작품분석, 면담, 지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객관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실제적인 환경에서의 기능적인 평가를 한다.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는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단위의 평가와 특수학급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모두 반영한다.

- 2) 특수학급의 수업은 특수교사가 개별화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생의 개별적 학습수준 및 능력을 평가하여 서술형으로 기록한다.
- 3) 학생의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가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계획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다.
- 4) (고등학교) 학력평가일과 정기고사 이외 다른 목적의 학교 단위 평가일에는 현장체험 학습을 계획하여 실시하되, 해당 평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현장체험학습에 불참할 수 있다.

## 2. 특수학급 시간표(예시)

(초등학교, 1학급)

	월	화	수	목	금
1	과목	과목			
	학생명	학생명			
2	과목	과목			
	학생명	학생명			
3	과목				
	학생명				
4					
5					

(중학교, 2학급)

교시	요일	월		화		수		목		금	
		교사1	교사2	교사1	교사2	교사1	교사2	교사1	교사2	교사1	교사2
1		과목	과목					과목			
		학생명	학생명					학생명			
2				과목							과목
				학생명							학생명
3								과목	과목		
								학생명	학생명		
4											
5											
6											
7											
방과후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1															
2	과목	과목													
3															
4															
5															
6															
7															

### 3. (○학기) 교과 지도 계획(예시)

#### 가. 수학과 지도 계획

##### 1) 학습목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조작 활동과 직접경험을 통하여 수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기초 기능을 익혀 이를 실생활의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2) 진도 운영 계획

2020학년도 ○학기

[주당3시간]

월	기간	수업 일수	시수		지도내용	지도 중점 사항	교수학습방법
			차시	누계			
8	1주 (0.00~0.00)	2	1	1	수학과 친해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단평가</li> <li>수 놀이하기</li> </ul>	
	2주 (0.00~0.00)	5	3	4	수와 연산-사칙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9까지의 수 알아보기</li> <li>덧셈 놀이하기</li> </ul>	질의·응답 개별학습
9	3주 (0.00~0.00)	5	3	7	수와 연산-사칙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 보고 덧셈하기①</li> <li>(몇십몇)+(몇)①</li> </ul>	프로젝트 협력학습 문제해결학 습
	4주 (0.00~0.00)	5	3	10	수와 연산-사칙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 보고 덧셈하기②</li> <li>(몇십몇)+(몇)②</li> <li>아하! 문제해결</li> </ul>	
	5주 (0.00~0.00)	5	3	13	도형-모양 분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가지 모양을 찾아보기</li> <li>여러 가지 모양을 알아보기</li> </ul>	
	6주 (0.00~0.00)	4	2	15	도형-모양 분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가지 모양을 꾸며 보기</li> <li>여러 가지 모양으로 놀이하기</li> </ul>	협력학습 개별학습

#### Tip

- 본 자료에서 제시한 교과 지도 계획은 참고자료이며, 학교별 양식에 맞추어 사용하십시오.
- 교과 진도 운영 계획에는 일정, 기간, 수업일수 및 시간, 지도 중점 내용, 지도 방법, 진도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진도 운영 계획은 특수학급에서 해당 과목 지도를 위해 사용하는 도서의 단원명 또는 과목별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상 세부 교수학습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학생별 지도 중점 사항이 상이한 경우는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나. (고등학교)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계획(예시)

1) 주제별 학습목표

나와 직업의 세계	학교의 직업활동을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즐거운 어울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환경과 나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다양한 장소에 대해 조사하고 이용할 수 있다.

2) 진도 운영계획

월	주제	교과	시수		학습내용	교과 성취기준
			차시	누계		
4	나와 직업의 세계	국어	16	16	온글읽기	[9국02-03] 읽기의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약한다.
		수학	15	15	수학보드게임 계량과 측정 페이 계산하기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	13	13	(마을)지역사회와 문화 (공동체)조별 협력활동	[9사(일사)03-01]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정치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이 수행하는 역할을 탐구한다.
		정보	6	6	메타버스 / 문서작업 마이크로 비트 기본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9직03-07] 문서 작성과 인터넷 활용 등 작업에서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기른다.
		진로와 직업	11	11	(바리스타)드립백 포장 (라탄공예)패턴이해하기 (진로탄탄)나의 장점 알기	[9진로01-02] 자기의 소중함을 알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소개한다. [9진로02-03] 자신의 직업 흥미와 적성 등 직업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9진로06-04] 간단한 구두 및 서면 작업 지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한다.
5	환경과 나	국어	19	35	마켓 홍보 포스터 제작 맛집 주문, 후기 작성 독해력 문제/ 온글읽기	[9국05-10]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9국03-0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수학	17	32	거리와 시간계산하기 계량과 측정 페이 계산하기	[9수01-04]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9수01-05]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계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사회	15	28	(마을)지역사회와 문화 (공동체)조별 협력활동 스쿨팜계획하기,식재하기	[9사(일사)02-01]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가 가지는 특징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정보	7	13	메타버스 /마이크로 비트 닷글 작성의 예의	기본[정통 02-01] 정보통신 기기를 선택하고 그 사용 기능을 익힌다. 기본[정통 02-01] 문제해결 코딩 프로그램의 기초 단계 예제를 해결한다.
		진로와 직업	13	24	(라탄공예) 상품만들기 상품포장 판매 스쿨팜 관리하기	[9진로01-02] 자기의 소중함을 알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소개한다. [9진로02-03] 자신의 직업 흥미와 적성 등 직업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다. (유치원) 놀이 계획안(예시)

통합학급 놀이 계획안을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개별화교육계획 목표 및 교육 활동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반명	놀이주제	기간
OO반 놀이 흐름 및 지원		
OO의 놀이 이야기	(사진 삽입)	
개별화교육계획 (IEP)	사회·정서	
	인지	
	의사소통	
	적응	
	운동	
다음 예상 관심과 놀이		
바깥놀이		
기본생활습관·인성교육		
안전교육		
특색 및 행사		
가정 연계		



## 4. 기본생활교육

### 가. 목적

- 1)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예절과 바른 생활습관 형성
- 2) 사회적응능력 신장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습득

### 나. 방침

- 1) 일관성 있는 지도를 위하여 학생의 생활지도 방법을 학교공동체가 공유한다.
- 2)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포괄적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 3) 개인의 특성과 장애정도.능력.환경.욕구 등을 잘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내용과 방법으로 꾸준히 지도한다.
- 4) 일상생활에서 신변처리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지도한다.

### 다. 월별 지도내용

월	내 용
3 . 4	
5	
6	
7 · 8	
9	
10	
11	
12 . 1	

※ 학생별 행동관찰을 통해 개인별 중재 지도를 한다.

### 라. 영역별 지도 내용

영역	지도내용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 청결히 하기</li> <li>- 화장실 바르게 사용하기</li> <li>- 책탈의 및 정리하기</li> <li>- 스스로 신변 처리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지품 및 사물함 관리하기</li> <li>- 필요한 양만큼 음식물 먹기</li> <li>- 물건 아껴 쓰기 및 재활용하기</li> <li>- 계절별 위생 관리하기</li> </ul>
학교 (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하교 및 타종 시각 준수하기</li> <li>- 학급 및 학교 규칙 준수하기</li> <li>- 친구 사이 예절 익히기</li> <li>- 1인 1역할 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운 말 바른말 사용하기</li> <li>- 웃어른과 친구에 대한 예절 지키기</li> <li>- 청결한 교실 유지하기</li> <li>- 청소도구 바르게 사용하기</li> </ul>
지역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 알기</li> <li>- 공공장소에서 질서 지키기</li> <li>- 배회하지 않고 곧장 목적지로 가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규칙 잘 지키기</li> <li>- 집을 나설 때 부모님 허락 받기</li> <li>- 늦기 전에 집으로 귀가하기</li> </ul>



## 5.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성·인권교육)

### 가. 목적

- 1)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 의식, 자기보호 등) 함양
- 2) 장애를 이유로 학교 내에서 차별을 받거나 폭력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 나. 방침

- 1)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추어 적절한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2)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중 지도하되 학기별 1회 이상 중점 지도한다.
- 3) 사회·정서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여 중점 지도하며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한 성인지 교육,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4) 비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시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5) 장애학생 인권보호 센터(서울시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등 장애학생, 교원, 학부모 등이 직접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안내한다.

### 다. 지도내용

- 1) 성교육

영역	주제	내용	시기
신체 발달과 성건강	남녀의 차이 알기	- 몸의 각 기관이 하는 일 알기 - 남녀 신체의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 찾기	
	생식기의 역할과 보호	- 생식기의 명칭과 역할 알기 - 생식기를 보호하는 방법 알기	
인간 관계와 성심리	친구 간의 예절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방법 알기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약속 정하기	
	소중한 나	- 내 생각과 감정 말하기 - 나의 권리(평등권, 자기결정권, 인간존엄) 알기	
	소중한 너	-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 구분하기 - 잘못에 대해 사과하기	
결혼과 건강한 가정	가족의 소중함	-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가족 간 지켜야 할 예절	- 가족 간의 지켜야 할 예절 알기	
사회적 환경과 양성평등	성폭력의 이해	- 장난과 폭력 구분하기 -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구분하기 - 성폭력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 표현하기	
	성폭력 대처방법	- 성폭력 위험 행동지침 알아보기 -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알기 -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알아보기	
	양성평등	- 공정한 생활의 중요성을 알기 -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과 관련 사례 찾아보기	



## 2) 인권교육

항목	추진 내용	방법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편의제공, 학교 운영 관련 건의 등	학교교육활동에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충분한 안내와 선택의 기회 부여	특수학급 교과 시간 활용 - 의사표현력 향상 지도 - 의사표현 기회 확대
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생활지도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지도

## 6.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 가. 목적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확산으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태도 및 습관 형성

### 나. 방침

- 1)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의 발굴·대응·조치 등 학생 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 3) 안전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가정과의 연계 교육이 되도록 한다.
- 4) 현장체험학습, 현장실습, 직업교육 사전교육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 5) 학생의 안전 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전 교직원이 숙지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외부활동을 포함한 교내외 생활안전계획 수립
  - 재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장애학생이 우선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 교출 등 학생 실종 시 신고 체계, 미인정 결석 학생 파악 및 관리 등
- 6) 사안 발생 시 안전수칙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처리한다.

### 다. 지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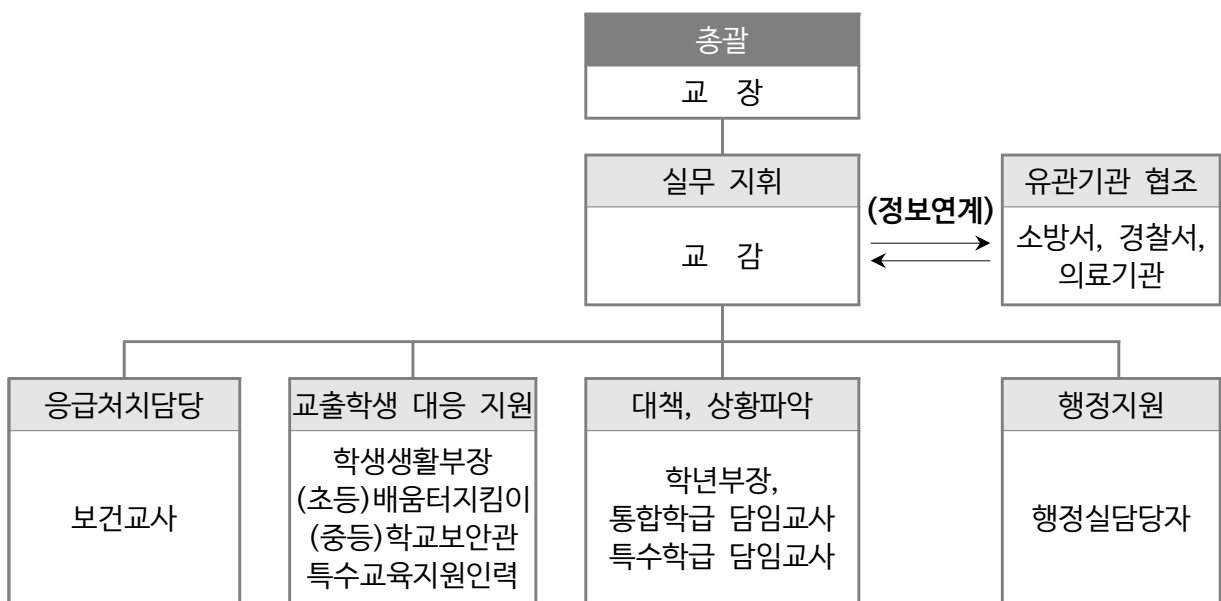
주 제	지 도 내 용	
생활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에서 지켜야 할 약속</li> <li>◦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기</li> <li>◦ 실내놀이 시 지켜야 할 약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한 물건을 만지지 않기</li> <li>◦ 위험한 놀이는 하지 않기</li> <li>◦ 계단,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 않기</li> </ul>
교통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하교 길 알기</li> <li>◦ 횡단보도를 바르게 건너기</li> <li>◦ 비 오는 날의 교통 . 보행안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벨트 착용하기</li> <li>◦ 안전하게 길 건너기</li> <li>◦ 차량 안전 지도</li> </ul>
신변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괴예방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을 잃었을 때 안전한 행동</li> </ul>
직업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장 내 안전 수칙</li> <li>◦ 안전 장비의 종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의 유형</li> <li>◦ 안전사고 시 대처 요령</li> </ul>
재난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대피 요령 알기</li> <li>◦ 천둥 번개 시 안전행동</li> <li>◦ 불조심 예방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시 대피 요령</li> <li>◦ 불장난 하지 않기</li> <li>◦ 전기를 바르게 사용하기</li> </ul>

**Tip**

학생안전매뉴얼(2025.12월 개정)을 참고하여 학교 환경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학생 지원 방안 수립 [\[바로가기\]](#)

### 라. 안전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체계

#### 1) 조직도





2) 교출 위험 학생 대응 전략

학생정보	○학년 ○반 ○번 ○○○
	호기심이 많고, ADHD 증세가 있어 주의산만, 충동성 행동이 있음. 장소 이동 시 무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음(특히 점심시간 이후 주의)
대응팀역할	① 학생생활부장: 교출학생 발생 시 교내 전체 방송으로 사안을 알리는 동시에 교출학생 대응지원팀 소집 ② 대응팀: 각각 자신이 맡은 학교 주변 지역에 대한 학생 탐색
대응순서	① 대응팀장(행정실무사)의 교내 방송 및 대응팀 소집 ② CCTV 확인 ③ 대응팀원 각 학교 주변 탐색 ④ 주변 탐색 10분 이상 경과 후 경찰 신고 결정 (학생 이동 시간 고려하여 신속히 결정)
탐색장소	교문, 운동장 구령대 및 등나무, 분리수거장, 각 학년 교실, 화장실, 복도

3) 학생별 등하교 방법

순	학반	이름	방과후 활동 및 등하교 방법
1			
2			
3			
4			
5			
6			
7			



## VI 특수학급 운영

### 1. 또래도우미(좋은 친구) 운영 계획(중,고등학교의 경우)

#### 가. 목적

- 1)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가치관 형성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감 향상 및 사회적응력 신장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 나. 방침

- 1) 또래도우미는 통합학급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중 필요한 학생 수 만큼 선정한다.
- 2) 또래도우미가 선정되면 특수교사는 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특성 및 활동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또래도우미 교육(소양교육)을 실시한다.
- 3) 또래도우미 학생에게는 학생 봉사활동 기록표를 참고하여 활동내용에 따라 학기당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 4) 봉사활동시간은 차등 지급하며 최소 0시간에서 최대 7시간(1년) 부여한다.
- 5) 또래도우미 봉사활동 실적은 수업시간 이외(일과 전·후,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에 행해지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6) 또래도우미 학생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다른 친구들이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고, 학교 및 학급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다. 활동내용

봉사 내용	활동 기간	확인자	비고
교육활동참여지원, 교내외 체험학습 친구돕기 등	2020.~2020.~	상담복지부장, 담임교사,특수교사	봉사활동인정시간 0~7시간 차등지급

#### 라. 기대효과

- 1) 친구와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인지, 언어, 자아존중감, 사회성 발달 촉진
- 2)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 함양

#### Tip

1. '또래도우미, 좋은친구' 등 학교별 명칭이 상이하며, 학생봉사활동 계획에는 '장애학생 도우미'라고 함
2. 특수학급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 도우미 운영은 선택사항임.
3. 위 사업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활동으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해야 함



## 2. 예산 관리

### 가. 예산 집행 원칙

- 1) 특수학급 운영 예산 집행 시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2) (공립) 특수학급운영비는 학교운영비(개별교부운영비)로 정산 및 이월의 대상이 아니며, 집행잔액(불용액)은 반납하지 않고 학교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정된다.  
(사립) 특수학급운영비는 학교운영비(통합교부운영비)로 정산 및 이월의 대상이 아니며, 집행잔액(불용액)은 반납하지 않고 학교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정된다.
- 3) 특수학급운영비는 특수교육 관련 교재·교구, 특수학급 운영 및 활동 경비, 통합교육 지원(통합학급 연계 교육활동,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등) 등에 사용한다.
- 4)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 운영비는 직업교육 강사비, 직업교육 관련 활동 경비, 직업교육 관련 재료비 등으로 사용한다.

### 나. 세입

(기준일: 2026. 3. 1.)

구분	단가	합계	비고
특수학급 운영비	(공립) 3,000천원×○학급= (사립) 3,500천원×○학급=		(공립) 4.1.자 교육통계 기준 학생수에 따른 차등 지원
진로직업교육 운영비	2,000천원×○학급=		고등학교만 해당
방과후교실(학교) 운영비	(초) 3,000천원×○학급= (중/고) 2,500천원×○학급=		※ 학교별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특수학급 유아교육비	9,440천원×○학급=		유치원만 해당
특수학급 신·증설비	(유) 20,000천원 (초/중/고) 40,000천원		해당학교 1학급 기준
특수학급 이전 및 환경개선비	30,000천원~40,000천원		해당학교 심사후 선정, 1학급 기준
특수학급 신규 설치 인센티브	· 교육환경개선비: 1억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지원비: 50,000천원 ·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연10,000천원씩 3년 간 지원		※ 학교지원과 지원, 해당학교 1교 기준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비	학급당 3,500천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만 해당)

다. 예산 편성

예산 내용	항 목	구 분	산출식	예산액 (천원)
특수학급 운영비	교육과정 운영비	교재, 교구, 도서 구입비		
		강사료(장애이해, 성교육 등)		
		현장체험학습 관련 제 경비		
		연계프로그램 운영비		
	통합교육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비		
	학급 운영비	학급 비품 구입비		
각종 소모품 구입비				
	<b>소계</b>			
진로직업교육 운영비	교육과정 운영비	교재, 교구, 재료 구입비		
		연계프로그램 운영비		
	<b>소계</b>			
방과후학교 운영비	강사인건비	강사비		
		강사 고용보험료		
	재료비	소모품비		
	<b>계</b>			
	<b>합계</b>			



### 3. 특수학급 운영 평가

#### 가. 목적

- 1) 교육 공동체의 참여, 소통, 협력을 통한 자율과 책임의 학급 운영
- 2)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학급자율운영체제 확립

#### 나. 방침

- 1) 평가의 전체적인 방향은 본교 추진 방향을 따른다.
- 2) 교직원 토론회 등을 통하여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3) 평가내용 환류 및 차년도 학급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대상	시기	평가 내용	방법	비고
교원, 학부모, 학생	12월	특수학급 평가 문항	만족도 설문	

#### 다. 평가 내용

영역	평가지표	평가 문항	평가 배점				
			5	4	3	2	1
통합교육	통합교육 활성화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육 시간의 적절성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교육	통합학급 교사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					
	통합교육 활성화	개별학생에 맞춘 통합교육 지원의 적정성					
	일상속 장애공감문화조성	교육과정 중심의 장애공감문화 활동					
개별화교육	개별화교육운영 내실화	각각의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법정 기준에 맞춘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및 활용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특성,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수업, 평가	학생 성장을 위한 평가	수업의 과정과 피드백을 통한 과정중심평가					
	평가의 공정성 제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장애특성을 반영한 평가 조정 실시					
학생지도	증거기반의 생활지도	행동 발달상황 누가 기록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의 적절성					
	인권존중 문화 조성	학생 인권 강화를 위한 노력					
특수학급 운영	특수학급 운영	특수학급 운영 계획 수립 및 활용의 적정성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의 기회 제공					
	예산편성의 투명성	특수학급 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특수학급 운영비의 효과적 집행					

❖ [서식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기록부

특수교육대상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기록부


대상학생		시작일 및 종료일
작성자	(인)	
일시	지도 내용 및 상담 내용	



## ❖ [서식 예시] 또래도우미(좋은친구) 신청서

**또래도우미(좋은친구) 신청서**

인적 사항	( )학년 ( )반 ( )번 성명( )
개인 연락처	
지원 동기	
확 인 란	<p style="text-align: center;">나는 ( )학년 ( )반 _____을/를 도울 “좋은친구” 학생으로서 봉사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 년    월    일</p> <p>신청학생: _____(인)</p> <p>통합학급 담임 : _____(인)</p> <p>특수학급 담임 : _____(인)</p>

○○ 학 교





## ❖ [서식 예시] 또래도우미(좋은친구) 봉사활동 확인서

**또래도우미(좋은친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일: 2020년      월      일

인적 사항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활동 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총 (      )시간	
활동 장소		
활동 영역	▪ 이웃돕기 활동      (      )	▪ 환경보호 활동      (      )
	▪ 캠페인 활동      (      )	
활동 내용		
활동 평가 및 특기 사항		
확인자	제출일: 2020년      월      일	
	직책(부서):	교사:      (인)

※ 학교 상황에 맞추어 명칭, 서식 수정하여 사용



2026 통합교육 업무 지원  
한 권에 담은 통합교육 실행 도움 자료



# 2

## • 개별화교육계획





## 2. 개별화교육계획



### ▶ 선생님들께

개별화교육계획(IEP)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지원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 및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학생의 장애 특성, 능력, 교육적 요구, 선호 및 관심 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최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각종 생활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 계획을 제공합니다.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참여와 성과에 대한 교육적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문서인 동시에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기록한 포트폴리오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 ❖ 관련법

-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 ❖ 유의사항

- 개별화교육계획은 학교에 배치된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수립·실행합니다.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도 해당)



### 예시자료

- ◆ [기안문]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 수립·실행 계획
- ◆ [계획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 수립·실행 계획
- ◆ [가정통신문]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안내
- ◆ [보호자 의견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보호자 의견서
- ◆ [회의록]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1
- ◆ [회의록]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2 (출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국립특수교육원)
- ◆ [동의서] 행동중재계획 수립 및 중재 절차 동의서
- ◆ [계획서] 특수학급 배치 학생 개별화교육계획
- ◆ [계획서] 일반학급 배치 학생 개별화교육계획
- ◆ [평가통지서] 특수학급 배치 학생 / 일반학급 배치 학생
- ◆ [서식] 학생 기초 조사서(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

###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역할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협의 및 결정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영역 및 교과 선택  
(유)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발달영역을 선택한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초,중,고) 학생의 교육적 요구, 교사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과 영역과 일상생활 영역을 선택한다.
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실행 및 평가  
각 구성원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 협의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과정과 평가를 점검한다.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조정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5.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구성원의 공평한 참여 보장  
개별화교육지원팀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6. 개별화교육계획의 수정 및 보완  
개별화교육지원팀의 모든 구성원은 개별화교육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구 분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의 역할
관리자 (교(원)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화교육지원팀 소집 및 운영</li> <li>•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관리, 주 책임</li> <li>•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 간의 협력 촉진</li> </ul>
특수교육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실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강점, 요구, 흥미 등에 대한 정보 제공</li> <li>- 교육지원이 요구되는 교과의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평가계획 작성 및 실행</li> </ul> </li> <li>•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특수)학급에서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정</li> </ul>
일반교육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실행, 평가 과정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학급 운영 정보 제공, 통합학급에서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li> </ul> </li> <li>• 통합학급에서 학생의 교과교육 및 생활교육 지도</li> <li>•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특수교사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의사소통 유지 및 협력</li> </ul>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교육적 요구 제공</li> <li>• 학교와 가정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유지 및 협력</li> </ul>

### ❖ 관련자료

- ①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국립특수교육원, 2019)
- ②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지원 자료 개발 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22)

**❖ 개별화교육 관련 법 조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개별화교육 정의	제7항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개별화교육 지원팀 구성	제1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기	제2항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학·진학 시 자료 송부	제3항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특수교육교원의 업무 지원	제4항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시기	제1항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기	제2항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 내용	제3항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및 결과통보	제4항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계획서 예시] **개별화교육지원팀 및 개별화교육 수립.실행 계획**

**202○학년도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 수립.실행 계획(안)**



○○학교

**I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II 목적**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 개별화교육계획의 성실한 실행으로 학부모의 신뢰도 및 통합교육의 질 제고

**III 방침**

- 개별화교육계획은 본교에 배치된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함
-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거쳐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매 학기마다)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되, 추후 학생의 정확한 현황 파악에 따라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함
-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는 비대면(의견서 제출, 원격회의, 전화 상담 등)으로 진행할 수 있음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 교원과 보호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그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할 경우 전입학교나 상급학교로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 송부  
상급학교 진학시에는 사본, 전학시에는 원본 송부
- 필요시 학기 중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실시하여 개별화교육 내용을 수정,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 IV 세부운영계획

###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가. 202○학년도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특수학급 설치교(예시)

대상학생					개별화교육지원팀				
순	학년	반	번호	성명	교장(감)	통합학급 담임교사	보호자 (관계)	특수교사	기타
1	○	○	○	○○○	○○○	○○○	○○○ (○)	○○○	진로교사○○○
2	○	○	○○○	○○○		○○○ (○)			
3	○	○	○○○	○○○		○○○ (○)			
4	○	○	○○○	○○○		○○○ (○)	순회교사○○○		

※ 특수학급 미설치교(예시)

대상학생					개별화교육지원팀				
순	학년	반	번호	성명	교장(감)	통합학급 담임교사	보호자 (관계)	순회교사	기타
1	○	○	○	○○○	○○○	○○○	○○○ (○)	○○○	보건교사○○○
2	○	○	○○○	○○○		○○○	○○○ (○)	○○○	



### 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역할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및 의사 결정
-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행 및 평가에 관한 점검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통학비 지원, 치료지원 등) 조정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구성원의 공평한 참여 보장
- 기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결정

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학생별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팀원을 추가할 수 있음

**Tip**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 등의 변동 사항 발생 시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 2.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정기 협의회 일정

구분	기간	장소	비고
1학기	2020. **. **. ~ **. **.		협의회는 학생별로 실시함
2학기	2020. **. **. ~ **. **.		

※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추후 별도 기안으로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정기 협의회는 매 학기 실시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

다. 전입이나 신규 선정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개별화교육지원팀 위원 재구성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개최 요구

라. 보호자가 부득이 협의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의견서 제출하도록 안내

## 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행·평가

구분	세부 내용	시기	비고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학습 수행 수준 및 행동 특성 탐색</li> <li>• 장·단기 및 월간 교육목표 설정</li> <li>• 교육내용, 방법, 종류, 시기, 통합의 정도 등을 결정</li> <li>• (필요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중재 지원 사항, 학교 내 의료지원 사항 등</li> </ul> </li> </ul>	학기 시작 3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상담</li> <li>• 기초조사서(자료)</li> <li>• 관찰, 면접</li> </ul>

구 분	세부 내용	시기	비고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li> <li>•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통합교육</li> <li>• 교육성취 정도에 따른 목표 수정</li> </ul>	학기 중	누가기록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취목표에 따른 평가</li> <li>• 지필, 면접, 관찰을 통한 종합적 서술평가</li> <li>• 교수·학습지도 방법의 개선 자료로 활용</li> <li>• 생활기록부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li> <li>• 새 학기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li> </ul>	학기 말	

#### 4. 문서처리

가. 개별화교육계획 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보호자 서명 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결재는 K-에듀파인으로 처리

나. 평가는 매 학기말에 실시하고 내부 결재를 득함

다. 결재를 득한 개별화교육계획은 학생별 누가기록철에 보관

### V 기대효과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 제공



❖ [가정통신문 예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안내

**2020학년도 0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안내**



○○학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관련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서는 다음의 협의회 일정을 보시고 참여 여부를 표시하여 **○월 ○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참석하시기 어려운 학부모님께서서는 아래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참하실 경우, 추후 개별상담을 기초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함)

-----[절 취 선]-----

학년	반	학 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b>협의회 참석 여부</b>				
<b>참 석</b>				<b>불 참 (서면의견제출)</b>
	날짜	날짜	날짜	날짜
00:00~00:00				
00:00~00:00				
00:00~00:00				
※ 희망하시는 날짜에 모두 ○표 해주세요.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의 일정 조율이 어려울 경우, 희망하시는 일시에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학 교

❖ [보호자 의견서 예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보호자 의견서

## 2020학년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보호자 의견서

본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보호자 의견서를 받고자 합니다. 본 의견서를 2020학년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학생지도의 목적으로 사용함을 인지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보호자 의견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보호자 의견을 아래 서면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학생명	
-----	--

1. 통합교육계획

유 형	교과(영역)	주 당 시 간	비고
통합학급 수업		특수학급 외 시간	
특수학급 수업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영역	내 용	비고
치료지원	예) 언어치료, 매주 목요일 16:00~16:50, 00치료실	
학습보조기기	예) 의사소통 학습보조기, 학교에서 종일 사용	2020.*.*. 최초대여
보조공학기기	예) 유니버설 코너체어, 학교에서 종일 사용	2020.*.*. 최초대여
통학비지원	예) 버스&지하철, 40분 소요, 보호자 동반 없음	
지원인력		
기타		

3. 기타 교육활동 참여 여부

내용	참여 여부	비고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동아리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통합학급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등		
장애이해교육		
특수학급 성교육		
기타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요구 사항

--



## ❖ [회의록 예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1

## 202○학년도 ○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학교

일 시	202○. ○. ○. (○) 00:00~00:00	장 소																								
대상학생	학년 반 이름																									
참 석 자	교감 ○○○	특수학급담임 ○○○	통합학급담임 ○○○	보건교사 ○○○	보호자 ○○○																					
안 건	(202○-○학기) ○○○ 학생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1. 통합교육계획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3. 기타 교육활동 4. 보호자 의견																									
내 용	<b>안건1. 통합교육계획</b>																									
	<table border="1"> <thead> <tr> <th>유 형</th> <th>교과(영역)</th> <th>주 당 시 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통합학급 수업</td> <td></td> <td>특수학급 외 시간</td> <td></td> </tr> <tr> <td>특수학급 수업</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방과후, 동아리 등)</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유 형	교과(영역)	주 당 시 간	비고	통합학급 수업		특수학급 외 시간		특수학급 수업				기타(방과후, 동아리 등)								
	유 형	교과(영역)	주 당 시 간	비고																						
	통합학급 수업		특수학급 외 시간																							
	특수학급 수업																									
	기타(방과후, 동아리 등)																									
	<b>안건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b>																									
	<table border="1"> <thead> <tr> <th>영 역</th> <th>내 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치료지원</td> <td>예) 언어치료, 매주 목요일 16:00~16:50, 00치료실</td> <td></td> </tr> <tr> <td>학습보조기기</td> <td></td> <td></td> </tr> <tr> <td>보조공학기기</td> <td></td> <td></td> </tr> <tr> <td>통학비지원</td> <td></td> <td></td> </tr> <tr> <td>지원인력</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r> </tbody> </table>					영 역	내 용	비고	치료지원	예) 언어치료, 매주 목요일 16:00~16:50, 00치료실		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통학비지원			지원인력			기타		
	영 역	내 용	비고																							
	치료지원	예) 언어치료, 매주 목요일 16:00~16:50, 00치료실																								
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통학비지원																										
지원인력																										
기타																										
<b>안건3. 기타 교육활동</b>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참여여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방과후 학교</td> <td></td> <td></td> </tr> <tr> <td>동아리</td> <td></td> <td></td> </tr> <tr> <td>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td> <td></td> <td></td> </tr> <tr> <td>통합학급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등</td> <td></td> <td></td> </tr> </tbody> </table>					내용	참여여부	비고	방과후 학교			동아리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통합학급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등									
내용	참여여부	비고																								
방과후 학교																										
동아리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통합학급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등																										
<b>안건4. 보호자 의견</b>																										
- 특수학급 성교육 참여 여부, 진로 및 진학 등																										
비 고	(필요시) 행동중재 지원 계획 추가																									

❖ [회의록 예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2(출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 국립특수교육원)

( )학년도 ( )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안건	( )학년도 ( )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학생	학년	반	이름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교육 평가 결과 및 교육적 요구 사정 내용 검토</li> <li>■ 교육적 요구 순위</li> <li>■ 개별화교육계획의 유형</li> <li>■ 개별화교육계획의 유형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교과목 또는 생활 지원 영역</li> <li>■ 교과(또는 영역)의 목표 및 내용</li> <li>■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li> <li>■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방안</li> <li>■ (필요시) 행동중재 지원 계획</li> <li>■ 기타</li> </ul>			



## ❖ [동의서 예시] 행동중재계획 수립 및 중재 절차 동의서

**행동중재계획 수립 및 중재 절차 동의서**

대상학생	학년 반			이름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중재실시기간	2020. . . ~ 2020. . .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별학생 행동중재계획 수립 및 중재 절차에 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아울러 ○○학교의 개별학생 행동중재 운영 방침과 중재 실행에 대하여 협조하고, 자녀의 긍정적 행동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0년 월 일 . .

학생 \_\_\_\_\_ ① 보호자 \_\_\_\_\_ ①

○○학교장 귀하

❖ [개별화교육계획 예시] 특수학급 배치 학생 개별화교육계획

[202○학년도 ○학기]

# 개별화교육계획

학년반	이름

시작일		종료일	

개별화교육지원팀	성 명	확 인
관리자 (교장, 교감)	000	전자문서대체
보호자		(인)

○ ○ 학 교



인적사항	학년 반		이 름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보 호 자		연락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영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장애등록여부 (복지카드 소지)		장애유형 및 정도			
행동 특성					
건강 상태	약물복용여부				
학생 및 보호자 의견					
통합교육 계획	교육 활동 계획	유 형	교과(영역)	주 당 시 간	비 고
		통합학급 수업		특수학급 외 시간	
		특수학급 수업			
		진로 · 직업교육			
		방과후학교			
		기 타 (특색프로그램 등)			
	관련 서비스	치료지원	OO심리상담소, O요일, OO:OO~OO:OO, OO치료		
		지원인력	등하교, 수업, 현장체험학습 지원		
		통학비지원	통학비 지원(2.2km/버스or자가용/학생 혼자or보호자 동행) / 해당없음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기타	(필요시) 행동중재 지원		

<b>(유) 발달영역</b> <b>(초중고) 과목명</b>	학반 :          학년          반	학생명 :
	작 성 자 :	교육기간 : 2020.0.0. ~ 2020.0.0.
현재학습 수행수준		
학기목표 (장단기 목표)		
월	교육 내용 및 방법	평가
○ 월		(예) 1~5 수를 바르게 셈
○ 월		
○ 월		
○ 월		
○ 월		
평가계획	(예) 관찰 및 서술평가 (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표정, 몸짓, 음성 언어)을 사용하는가?	



# 개별 학생 행동 중재 계획



인용: Laura A. Riffel 저. 박지연 · 김지수 공역(2018). 개별학생을 위한 긍정적행동지원 학지사

**Tip**

1. 위기행동에 대해 체계적 중재가 필요한 학생은 개별 학생 행동 중재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화 교육 계획에 포함
2.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행동 중재 계획은 교육청의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
3. 행동 중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능 평가 자료, A-B-C 관찰양식, 문제행동 지도 기록의 서식과 작성 요령 등은 교육청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 참고

교육부 장애학생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국립특수교육원, 2023)

「교육부 장애학생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 학교 실행 도움 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2026)

❖ [개별화교육계획 예시] 일반학급 배치 학생 개별화교육계획

[202○학년도 ○학기]

# 개별화교육계획

학년반	이름

시작일		종료일	

개별화교육지원팀	성 명	확 인
관리자 (교장, 교감)	000	전자문서대체
보호자		(인)

○ ○ 학 교



인적사항	학년 반		이 름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보 호 자		연 락 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영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장애등록여부 (복지카드 소지)		장애유형 및 정도		
행동 특성				
건강 상태	약물복용여부			
학생 및 보호자 의견				
통합교육 계획	교육 활동 계획	<p>예시1. 전 교과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름.</p> <p>예시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으로 배치되어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따름</p>		
	관련 서비스	치료지원	00심리상담소, 0요일, 00:00~00:00, 00치료	
		지원인력	해당없음	
		통학비지원	통학비 지원(2.2km/버스or자가용/학생 혼자or보호자 동행) / 해당없음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순회교육 지원 여부		
	기타	(필요시) 행동중재 지원		



**Tip** 방과후학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경우, 일반학급 배치 학생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필요

❖ [개별화교육계획 평가통지서 예시] 특수학급 배치 학생

2020학년도 0학기 개별화교육계획 평가통지서 

학반번	학생명	배치유형	작성자
		특수학급	(인)
과목(영역)	평가내용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진로와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행동발달상황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ul>		



## ❖ [개별화교육계획 평가통지서 예시] 일반학급 배치 학생

**2020학년도 0학기 개별화교육계획 평가통지서**

학반번	학생명	배치유형	작성자
		일반학급	(인)
<b>평가내용</b>			
<p>2020학년도 0학기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전교과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 및 평가에 준함.</p>			

❖ [기초조사서 예시] 학생 기초 조사서(유치원)

## 유아 기초 조사서

다음은 특수교육대상유아 및 보호자의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아의 특성과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문항에 응답해 주시고 각 항에 공란 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유아와의 관계	작성일자	
-----	---------	------	--

### 1. 인적사항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도로명)			
주양육자		연락처	
장애인등록여부(복지카드소지)		장애등록 유형	장애정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영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 2. 치료지원현황

치료지원영역	기관명	치료 시간 (요일, 시간)	치료형태 (개별/집단/통합)

### 3. 의학적 내력 및 건강상태

입원 또는 수술한 경력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언제:   기간:   사유:
현재 복용하는 약	있다( ), 없다( ) 약 종류:           복용시간:
시·청각문제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자세히 기록:
보장구 사용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보장구 종류:   보장구 착용 방법:
음식을 포함한 알러지 여부	
신체활동 시 유의할 사항	
자주 걸리는 질병	

### 4. 가정활동

부모님의 양육 참여정도 및 태도	부: 모:
형제와의 관계	
가정에서 부모님, 형제와 함께 하는 활동	부모님: 형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 구성원:



❖ [학생 기초조사서 예시] 학생 기초 조사서(초등학교)

## 학생 기초 조사서

다음은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생의 특성과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문항에 응답해 주시고 각 항에 공란 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학생과의 관계	작성일자	
-----	---------	------	--

### 1. 인적사항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도로명)			
주양육자		연락처	
본교 재학하는 형제자매			
장애인등록여부(복지카드소지)		장애등록 유형	장애정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영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 2. 치료지원현황

치료지원영역	기관명	치료 시간 (요일, 시간)	치료형태 (개별/집단/통합)

### 3. 의학적 내력 및 건강 상태

입원 또는 수술한 경력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언제:   기간:   사유:
현재 복용하는 약	있다( ), 없다( ) 약 종류:           복용시간:
시·청각문제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자세히 기록:
보장구 사용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보장구 종류:   보장구 착용 방법:
음식을 포함한 알러지 여부	
체육활동 시 조심할 부분	
자주 걸리는 질병	

### 4. 현재수행수준

가. 발달정도	
대 근육	
소 근육	
의사소통	
사회성	
인지	
심리행동특성	
강점 및 약점	



나. 교과학습		
과목	현행수준	보호자 의견
국어		
수학		
영어		
기타		

다.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1. 학생이 좋아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교과 또는 놀이활동)	
2. 학생이 싫어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체육 등)	
3. 학생이 특별히 잘하거나 자신있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학생의 행동 중 통합학급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행동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5. 자녀의 학교 활동에서 최우선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학습의 향상, 또래 아이들과 상호작용	
6. 특수학급에서 지도받기를 희망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라. 일상생활		
1. 학생이 집 주소 및 전화번호, 부모님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나요?		
2. 자신의 생년월일을 외우고 있나요?	네	아니오
3-1. 등학교 방법은 무엇인가요?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3-2.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교 등학교가 가능한가요?	네	아니오
4. 교내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나요? (이동수업 및 급식실)		
5. 화장실 신변처리 시 불편함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6. 옷을 갈아입는데 불편함이나 지원한 부분을 적어주세요.		
7. 식사 시 지도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적어주세요.		
8.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잘 챙깁니까? (예:실내화 가방, 체육복, 필기도구, 교과서, 가정통신문 등)		

5. 기타 공유하고 싶은 의견이나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

1. 신입생 또는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만 기초조사서를 받고, 재학생은 간단한 보호자 의견서를 받습니다.
2. 나이스, 배치 서류 등에서 사전에 습득할 수 있는 항목은 조사서에서 제외합니다.

❖ [학생 기초조사서 예시] 학생 기초 조사서(중.고등학교)

## 학생 기초 조사서

다음은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생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문항에 응답해 주시고 각 항에 공란 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학생과의 관계		작성일자	
-----	--	---------	--	------	--

### 1. 인적사항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도로명)					
주양육자			연락처		
본교 재학하는 형제자매					
장애인등록여부(복지카드소지)			장애등록 유형	장애정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영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 2. 치료지원현황

치료지원영역	기관명	치료 시간 (요일, 시간)	치료형태 (개별/집단/통합)

### 3. 의학적 내력 및 건강상태

입원 또는 수술한 경력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언제:   기간:   사유:
현재 복용하는 약	있다( ), 없다( ) 약 종류:   복용시간:
시·청각문제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자세히 기록:
보장구 사용	있다( ), 없다( ) / 있는 경우 보장구 종류:   보장구 착용 방법:
음식을 포함한 알러지 여부	
체육활동 시 조심할 부분	
자주 걸리는 질병	

### 4. 현재수행수준

가.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1. 학생이 좋아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교과 또는 놀이활동)	
2. 학생이 싫어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체육 등)	
3. 학생이 특별히 잘하거나 자신있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학생의 행동 중 통합학급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행동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5. 자녀의 학교 활동에서 최우선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학습의 향상, 또래 아이들과 상호작용	
6. 특수학급에서 지도받기를 희망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나. 교과학습수준		
과목	현행수준	보호자 의견
국어	글 읽고 내용 이해 가능 ( ) 글 읽기 가능 ( ) 받아쓰기 가능 ( ) 보고 쓰기 가능 ( )	
수학	100 이상의 수 세기만 가능 ( ) 덧셈과 뺄셈 가능 ( ) 곱셈과 나눗셈/ 분수의 계산 가능 ( ) 방정식 풀이 가능 ( )	
영어	알파벳 대.소문자 읽기 가능 ( ) 알파벳 대.소문자 보고 쓰기 가능 ( ) 영어단어 10개 이상 읽고, 쓰기 가능 ( ) 주어+동사의 문장 쓰기 가능 ( )	
기타	(그 외 학생이 관심 있어 하는 과목)	

다. 일상 생활 부분		
1	학생이 집 주소 및 전화번호, 부모님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나요? 외우는 것과 아직 외우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2	자신의 생년월일을 외우고 있나요?	네      아니오
3-1	등하교 방법은 무엇인가요?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3-2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교 등하교가 가능한가요?	네      아니오
4	교내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나요? (이동수업 및 급식실)	
5	화장실 신변처리 시 불편함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6	옷을 갈아입는데 불편함이나 지원한 부분을 적어주세요.	
7	식사 시 지도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적어주세요.	
8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잘 챙깁니까? (예:실내화 가방, 체육복, 필기도구, 교과서, 가정통신문 등)	

라. 진로 및 진학	
1	관심있는 진로(직업) 분야 보호자: 학생:
2	대학교 진학 희망 여부

5. 기타 바라는 점이나 이야기할 내용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

1. 신입생 또는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만 기초조사서를 받고, 재학생은 간단한 보호자 의견서를 받습니다.
2. 나이스, 배치 서류 등에서 사전에 습득할 수 있는 항목은 조사서에서 제외합니다.

3

•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 3.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 ▶ 선생님들께

장애공감문화란 단순히 장애인을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감정과 요구를 공감하고 같이 주장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장애 공감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며 협력하고 소통한다면,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두가 행복한 통합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 문화 형성을 통한 통합교육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

- ①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7조(교육의 실시)

#### ❖ 관련공문

- ① 2026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운영 계획
- ② 2026 통합교육 기본계획
- ③ 2026 서울특수교육



#### 예시자료

- ◆ [계획서]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계획
- ◆ [기안문] 장애이해교육 실시 계획
- ◆ [기안문] 장애공감문화 주간 운영 계획
- ◆ [기안문] 교직원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계획



### ❖ 장애인식개선 관련 의무교육 지침(참고)

대상	교육 내용	운영횟수	관련 공문
학생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포함)	연2회 이상	2026학년도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운영 계획
교직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1회 이상	2025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안내(각급학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연1회 이상	2025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특수교육과-5736, 2024.6.12.)
학부모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1회 이상	2026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운영 계획 알림

### ❖ 유의점

- 가.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연령별 특성과 통합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특히 유아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시 ‘모두를 위한 교육’, ‘다양성 존중 교육’ 등 장애인식  
개선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되 ‘장애’가 부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나. 통합학급 담임교사는 특수·통합 교육 관련 연수 15시간 이상 이수를 권장하고 있으며  
추후 실적을 보고한다.  
※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 연수활용(<https://iedu.nise.go.kr>)
- 다. 교직원 대상 원격연수 운영 시, 연수 대상에 따라 이수 조건이 다르므로 연수 내용을 확인한다.

- \* 공무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보건복지부)
- \* 근로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보건복지부)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고용노동부)을  
각각 이수해야 함
- \* 2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통합과정 연수도 있음  
(예: 중앙교육 연수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통합 교육(3시간)])

- 라. 교육 종료 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http://www.able-edu.or.kr))에 접속하여 교육  
및 이수 결과를 입력한다.  
※ 부진기관(70점 이하)은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대상이 될 수 있음(2021년 이후)  
※ 병설유치원은 원 소속 초등학교와 합산하여 교육실적 입력(2022년부터)



❖ [참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배점표

유형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비고
계획수립	연간교육계획수립(10)		수립/미수립	10/0	
교육실시	교육참여* (60)	기관장(10)	참여/미참여	10/0	
		고위직**(10)	참여율	0~10	**고위직 - 교감, 부장교사, 실장 등
		직원(20)	참여율	10~20	*유치원(10~25)
		학생(20)	참여율	5~20	*유치원(10~25)
	교육방법 및 활용(30)		대면교육	15~30	대면교육 최소 1회 이상 필수 실시
		비대면교육	10~15		
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실시		3회 이상	5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기관 내부 필수 제도화* 마련			2	*내부규정, 학칙 교육과정 편성 등
	장애당사자 교육 강사 활용			2	
	교육 의무 대상기관 미소속자 교육 실시 (예)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등			1	
합계				100점	가점 시 110점

- 교육방법

대면교육	1. 전문강사, 지정기관, 사업수행기관 교육 - 전문강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교육강사 - 지정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 - 사업수행기관: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2. 일반강사 교육 3. 내부직원 교육 3-1. 특수교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장애분야 교원
비대면교육	5.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 6. 일반 자료 활용 교육

- (부진기관 기준) 당해 연도 교육 실적 미제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대면 교육 미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결과보고서(학생 대상 교육의 경우 교육계획서로 같음), 연수 명부 등을 첨부할 수 있다.

**Tip** 교육계획 수립

1. 연간 교육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목표, 내용, 일시, 대상, 방법, 강사 등 필수 포함
2. 통합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 필수 요소 포함



❖ 교육과정 연계 장애공감수업 운영 자료(서울시교육청 개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웹 탑재 링크
“서로 다른 우리, 함께 놀이해요”	“서로 다른 우리, 함께 해요”	“영화와 도서로 시작하는 장애공감 수업 레시피”	<b>바로가기</b>
			

❖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카드뉴스(서울시교육청 개발)

				
연수 비교 	유치원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 	초·중·고 학생 	통합학급 교사 

❖ 학교관리자 대상 통합교육 안내서(서울시교육청 개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계획서 예시]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계획

# 202○학년도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계획(안)



○○학교

## I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동법 시행령 제16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803호)

## II 목적

- 학생 및 교직원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개개인의 다양성을 공감하고 존중하게 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도움이 되는 통합교육 실행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감하고 지원하는 학교 분위기 조성

## III 방침

- 일회성 행사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시간을 미리 확보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여 추진
- 교직원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직원 회의 또는 연수시간을 확보하여 업무 담당자 또는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할 수 있음
- 학부모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실시하며,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교 공개의 날 등에서 전문강사, 우수 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전후로 교육주간을 정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에는 장애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 포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 선정 시 본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
- 학년 초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통합학급 적응기간에 통합학급별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거나,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 전교직원에게 특수교육대상학생별 적절한 지원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음  
(단, 개인정보, 과도한 정보제공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실시)

## IV 세부운영계획

### 1. 개요

영역	대상	일시	내용	비고
장애공감 교육 주간 (1학기)	전교생		장애이해교육 드라마'***'시청 및 소감문 작성	교육부 제작 장애이해 교육용 드라마
	전교생		장애인의 날 기념 백일장 홍보 및 공모	참가자는 특수학급으로 신청
	1학년 3반, 4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통합학급 대상 외부강사 교육
	전교생 및 학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오행시 짓기	우수 작품 시상
장애공감연수	교직원		함께하는 통합교육	
장애인식개선	학부모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외부전문강사 교육
장애인권교육 (2학기)	전교생		장애인권 관련 영상 시청 및 소감문 작성	
			독서 챌린지 (장애 이해 도서)	

### 2.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 가. 일시: 202○년 4월 \*\*일 \*,\*교시(학급별 1시간씩 운영)
- 나. 장소: 각반 교실
- 다. 대상: 1학년 3반, 4반(특수교육대상 학생 소속 학급)
- 라. 강사: \*\*복지관 장애이해교육 전문 강사 ○○○
- 마. 교육 내용: \*\*\*



### 3. 가족과 함께하는 오행시 짓기 행사

가. 오행시 주제: 배리어프리

나. 활동 방법: 배리어프리에 대한 안내(가정통신문, 패들렛) 후, 배리어프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행시 짓기를 함

다. 추진 일정

순	일정	내용	비고
1	2020년 **월 **일	배리어프리 소개 - 패들렛에 내용 탑재 - 가정통신문으로 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2	2020년 4월 **일 ~ **일	오행시 제출	패들렛으로 제출
3	2020년 **월 **일	우수작 선정 및 결과 발표	가정통신문 발송
4	2020년 **월 **일	우수작 시상	
5	2020년 **월 **일	오행시 결과물 전시	특수학급 앞 및 게시판

라. 시상 계획

- 공감상: 3명, 상품 ○○
- 함께상: 5명, 상품 ○○○

### 4. 독서 챌린지

가. 기간: 2020년 10월 \*\*일 ~ \*\*일

나. 활동 방법

- 장애이해, 다양성 존중 관련 도서 등을 선정 후, 특수학급 및 학교 도서관에 별도의 대여 부스를 만들어 홍보함
- 자유롭게 책을 읽고, 느낀 점 등을 패들렛에 기록함
- 다독자와 소감 작성 우수자를 선정하여 기념품을 증정함

Tip

기념품은 장애인 기업, 장애인 생산 물품 등을 구입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5. 교직원 대상 장애공감 연수

- 가. 일시: (1차) 202○년 \*\*월 \*\*일, 15:00~16:00 (2차) 202○년 \*\*월 \*\*일, 15:00~16:00
- 나. 장소: 직원 회의실
- 다. 대상: 전 교직원
- 라. 강사: (1차) 특수교사 (2차) 외부 전문 강사
- 마. 교육 내용: 함께하는 통합교육, 공존의 학교문화 형성

**Tip** 연수 명부를 작성하면 결과 보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6.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 가. 일시: 202○년 \*\*월 \*\*일, 10:00~11:00
- 나. 장소: 시청각실
- 다. 대상: 학부모
- 라. 강사: 외부 전문 강사
- 마. 교육 내용: 함께하는 통합교육

**Tip** 연수 명부 작성 또는 사진 촬영 후 보관하여 결과 보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V 예산운영계획

항목	내용	산출식	소요예산	비고
운영비	교직원 연수	강사료		
	학부모 연수	강사료		
	장애공감 교육 주간운영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운영			
	장애인식개선 기념품 / 상품 제작			
합 계				


## VI 기대효과

-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긍정적인 인성 향상과 더불어 사는 삶 실현
- 다양성 존중교육으로 ‘다 다름’에서 ‘다다름’으로 이끌어 가는 공존의 학교 문화 조성




❖ [기안문 예시] 장애이해교육 실시 계획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1학기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운영 계획(안)

---

1. 관련: ○○학교-0000(202○. \*. \*\*) 통합교육계획

2. 학생 대상 1학기 장애이해교육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	일시	장소	내용	강사	〈교육방식〉	비고
1학년		각반 교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외부 전문강사	강의식	○○복지관 장애이해 교육 전문 강사
전교생		각반 교실	너만의 거리에서, 우리는	-	교육영상 활용	202○ 교육부제작 장애이해교육용 드라마
전교생		각반 교실	배리어프리영화제 (영화시청, 소감 주변의 배리어프리 찾아보기 등)	-	교육 자료 활용	패들렛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활동 후, 결과물 제출

3. 운영예산: 금000원(금몇십몇만원)

붙임 202○학년도 1학기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운영 계획(안) 1부. 끝.

---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비공개(6)



### ❖ [기안문 예시] 장애공감문화 주간 운영 계획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학년도 장애공감문화 주간 운영 계획(안)

1. 관련: ○○학교-0000(2020. \*. \*\*) 통합교육계획
2. 2020학년도 장애공감문화 주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역	대상	활동내용	기간
장애공감교육	통합학급 학생	장애공감교육	3월 중 통합학급별 1시간
	전교생	장애공감교육 영상 시청 및 감상문 작성	4월 22일(*)
장애공감교육 홍보 및 장애인권교육	전교생 & 학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 챌린지”	4월 18일(*) 종이 통신문 제공, 4월 22일(*)까지 소통챌린지 영상 제출
	전교생	장애인의 날 홍보 및 소통챌린지 전자게시판 게시	4월 18일(*) ~4월 29일(*)
장애공감교육 연수	교직원	공감으로 시작하는 통합교육	4월 18일(월) 교직원 회의 중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3178		/ http://
전화	/전송 /	/ 비공개(6)



❖ [기안문 예시]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안)

1. 관련: ○○학교-0000(202○. \*. \*\*) 통합교육계획
2. 202○학년도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가. 일시: 202○.\*.\*. (\*) 15:30~16:30
  - 나. 장소: 학교 회의실
  - 다. 대상: 전 교직원
  - 라. 강사: ○○○
  - 마. 내용: 그 해 교육자료 또는 내용에 근거한 제목 작성
  - 바. 기타: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직원의 경우 원격연수 실시
3. 소요예산: 금00원(금몇십몇만원)

붙임 202○학년도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료 1부.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 http://
전화	/전송	/ 비공개(6)

# 4

## • 현장체험학습





## 4.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 ❖ 개요

####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은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서울 현장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학교 여건,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음

※1일형 현장체험학습: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밖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당일형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의미

### 1.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

가. 특수학급 운영계획에 반영

- 특수학급 운영계획에 목적, 일시, 대상, 방법 등 연간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포함
  - 교육과정 시수, 학생안전대책, 불참학생 교육계획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

나. 특수학급 운영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별도 계획 수립 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 실시

다. 현장체험학습 장소 사전답사: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을 수립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 가능하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학교 자율결정 사항은 학교 협의 후 추진

### 2. 교육과정 재구성에 의한 수업 시수 산입

가. 교육과정 재구성에 의해 실시하는 수업 시수는 관련 교과(군)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시수로 산입

나. 무리한 수업시수 산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다. 학생의 일상적인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9시~17시 실시 권장

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바탕으로 학교장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산입

마. 현장체험학습의 장소, 학교 도착 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입



### ❖ 관련자료

- ④ 2026 서울 현장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체육건강예술교육과-1569, 2026.2.5.)
  -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등 참고
- ④ 서울특별시 (유/초/중/고/특수교육) 교육과정
- ④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 자료 - 관련 공문 참조

### ❖ 관련법

-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 ④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 ④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Tip

1. 학년초 교육계획에 포함되어 안내한 경우 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생략 가능
2. 수이자부담경비가 없는 경우, 참가동의서 수합 여부는 학교 자율 결정
3. 현장체험학습 장소 사전답사
  - 교육목적, 거리, 시간, 안전, 유해환경, 위생 상태 등 확인
  - 온라인을 통해 여건을 확인하는 ‘온라인 답사’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현장답사’로 구분
  -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을 수립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 가능



#### 예시자료

- ◆ [기안문]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 ◆ [기안문]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지출 품의(재정문서)
- ◆ [계획서]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 ◆ [서식]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보고서
- ◆ [서식]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현장점검 내용
- ◆ [서식]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 ◆ [서식] 현장체험학습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를 위한 체크리스트



❖ [기안문 예시]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안)



1. 관련: ○○학교-000(202○.\*.\*) 202○학년도 ○○학교교육계획
2. 202○학년도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학년도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안) 1부.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비공개(6)



## ❖ [기안문 예시]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지출 품의(재정문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서울대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6월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지출 품의		
1. 관련: ○○학교-000(202○.*.*) 202○ ○○학교교육계획 2. 202○학년도 6월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나. 장소: 다. 참석인원: 0명(특수교육대상학생 0명 중 0명, 불참학생 없음) 라. 인솔교사: 0명(특수교사, 특수교육실무사) 마. 소요예산: 금0,000원(금000원) 1) 산출내역 입장료 (학생) 00원*00명=00원, (교사) 00원*00명=00원 식비(학생) 00원*00명=00원, 간식비(학생) 00원*00명=00원 2) 학생 1인당 경비 000원(경비는 특수학급 운영비에서 지원) 바. 세부운영계획: [붙임2] 참고		
붙임 1. 일반지출품의서 1부. 2. 202○ 6월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안) 1부. 3. 견적서(입장료) 1부. 끝.		
<b>Tip</b> 필요시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에 ①답사결과 보고서 ②잔류학생 지도계획 ③안전계획 등을 포함하여 결재를 득할 수 있음		
교사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비공개(6)



❖ [계획서 예시]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

# 202○학년도 ○월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안)



○○학교

## I 근거

- 202○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체육건강문화예술과-, 202○. \*\*. \*\*.)
- 202○ ○○학교 통합교육계획(○○학교-000, 202○, \*\*. \*\*)

## II 목적

- 대중교통 이용, 공공질서 준수 등 기본생활 태도를 익힘
- 식물 심기, 채소 수확하기 등의 농촌체험을 통해 지역사회 다양한 생활 모습에 관심 갖기

## III 방침

- 사회생활 적응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되 학생의 장애 특성을 반영하여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장과 사전 협의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회, 국어, 과학, 창의적체험활동을 보충하는 활동으로 계획하며, 사전·당일·사후 교육활동이 연계적으로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운영
-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며, 각 활동 시 주의할 점을 충분히 교육
- 당일 갑자기 발생하는 불참학생은 통합학급의 수업에 참여
- 입장료, 체험활동비, 교통비(전세버스), 보험료 등 체험학습 운영비는 특수학급 운영비에서 지원

## IV 세부운영계획

### 1. 개요

일시	2020년 ○월 00일, 09:00~16:40			
장소				
주제				
참가인원	00명 (특수교육대상학생 00명, 특수교사 00명, 특수교육지원인력 00명)			
관련 교과 및 시수	사회	2시간	과학	2시간
	국어	2시간	창체	1시간

### 2. 일정표(활동내용)

시 간	일 정	비 고
09:00-09:30	• 집합 및 인원점검, 조별 모임 후 출발	우천이나 대기오염 시 예정대로 진행 ※ 대기오염 시 마스크 착용
09:30-10:20	• 안전교육 - 야외활동 시 지켜야 할 일 알아보기 • 도착 및 활동 안내	
10:20-12:20	체험	
12:20-13:20	• 점심식사	
13:20~14:30	체험	
14:30-15:30	• 인원 점검 및 출발, 학교 도착 • 교통안전교육 - 차량 이동시 지켜야 할 일 알아보기	
15:30-16:40	• 안전 하교 및 생활지도	

### 3. 교통수단 및 이동 경로

항 목	내 용
교통수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p> <p>학교 ↔ 서울역 00번(학교 입구) 승차 → 청량리역환승센터 하차 → 1호선 청량리역 승차 → 서울역 하차</p> </div>
소요 시간	약 1시간 10분



#### 4. 학생 지원 인력 배치

순	반	학생명	지원인력	순	반	학생명	지원인력
1			특수교사 000	6			지원인력 000
2			지원인력 000	7			지원인력 000
3			특수교육실무사	8			특수교사 000
4				계		여(**), 남(**)	특수교사 2명, 지원인력 4명
5							

#### 5. 준비물

교 사	간편복, 아동명단, 호루라기
학 생	반티, 운동화, 도시락, 물, 비닐 봉투 2장, 멀미약 등

#### 6. 불참학생 지도계획

- 가. 불참학생 없음
- 나. 사전계획에 의한 결석이 아닌, 당일 불참이 결정된 경우 학생의 건강 상태(감기, 배탈)를 고려하여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등교하여 통합학급에서 수업받도록 조치

#### 7. 유의사항

- 가.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고, 기구 사용 시 안전에 유의
- 나. 버스 안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도록 지도
- 다. 교사 지시에 잘 따르고 개인 활동은 하지 않도록 지도(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 8. 사전답사

- 가. 일 시: 202○. 00. 00.(수), 13:00~16:40 실시 예정
- 나. 답사자: 특수교사 2명(예정)

#### 9. 사전 안전 지도 내용

- 가. 학생 사전안전교육(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 자료 별첨)
  - 1) 일시 : 202○. 0. 00.(0)
  - 2) 교통안전 지도 - 승, 하차 시 유의점, 차내 행동 유의점, 안전벨트 착용, 멀미 대처법
  - 3) 체험 안전 지도 - 체험 활동 시 지켜야 할 점 숙지하기
  - 4) 성교육, 학교폭력 지도 - 성적 언어와 행동, 학교폭력 해당 행동

**Tip**

현장체험학습 장소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추가 및 변경  
 - ‘학생안전매뉴얼’(2025.12.)을 참고 [바로가기]

나. 특수교육지원인력 사전안전교육

- 1) 일시 : 202○. 0. 00.(0), 08:30~08:50
- 2) 내용 : 전체 일정 및 활동 계획 안내, 장소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폭력예방교육, 응급 상황 시 구체적 행동 지침 교육 등
- 3) 방법 : 현장학습 계획서와 사전답사 자료를 이용한 교육

**10.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 가. 체험학습 준비 시 참가 학생 및 인솔자의 휴대폰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관리
- 나.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미리 준비된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가능한 방법(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해 즉시 연락
- 다. 사고 초기에는 보고 체계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먼저 확인 후 연락  
(선(先) 유선보고, 후(後) 사안보고서 제출)
- 다. 비상 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구조 및 응급 후송 요청

**V 예산운영계획(안)**

○ 항목: 특수교육 교과활동 교육운영비

○ 산출근거

(단위: 원)

항목	내용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운영비	입장료			교육청지원
	체험료			
	보험료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인력 인건비			
	학생 간식비			
합 계				

※ 입장료, 체험료 등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및 동반자 할인 가격 적용



## VI 기대효과

-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심신의 건강 증진 및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함양
-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직·간접 경험으로 사회적응 능력 신장

❖ [사전답사결과보고서 예시]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보고서(서울시교육청 서식 인용)

##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결과보고서



### 1. 답사 개요

답사 일시	2020년 00월 00일 화요일 15:00 ~17:00
답사 장소	
참여 교사	

### 2. 답사 결과

순	내 용	점수	의견
1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10)		
2	효율적인 코스 선정(10)		
3	교육 프로그램 (10)		
4	학생 수용 규모와 체험지 이동 거리의 적정성(10)		
5	학생 안전생활 보장(10)		
6	시설물의 청결도(10)		
7	유해환경 차단 (10)		
8	장애인편의시설 구축 여부(10)		
9	기타 의견		
소 계			

### 3. 답사 사진



### 4. 답사 종합의견

- 버스 승하차 장소와 아쿠아리움이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 휠체어 이동 시 어려움이 없이 원활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아쿠아리움 내 지체장애학생의 이동 동선 및 사용 가능 화장실 확인하였음
-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내 푸드코트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장점검 내용 예시]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현장점검 내용** (출처: 서울시교육청)**사전 답사 현장점검 내용**

점검내용	상	중	하	비고(의견)
<b>1) 체험장 시설</b>	○			
① 체험정은 인증 받은 기관인가?	○			
② 학생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			
③ 체험장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			
④ 시설 내외부에 선정적인 포스터나 유인물이 부착되어 있는가?	○			
<b>2) 안전</b>				
①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② 곳곳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못 등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가?				
③ 계단이나 난간, 시설물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④ 설치물들은 안전한가? (각종 활동 장비 및 시설물)				
⑤ 체험활동 중 응급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⑥ 응급사고 발생 시 환자를 후송 할 병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가?				
⑦ 체험장은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⑧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경사로, 점자블록, 안전 손잡이 등)과 휠체어 이동 동선이 확보되어 있는가?				
<b>3) 위생</b>				
①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②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b>4) 식사 공간</b>				
① 학생 단체가 취식할 수 있는 규모와 공간이 확보되는가?				
② 취식 공간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③ 취식 공간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우천 및 미세먼지 발생 등의 날씨에 대한 대안 공간이 마련되어있는가?				
⑤ 이동 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인가?				
<b>5) 일정 및 코스</b>				
① 학생의 신체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코스 선정이 아람단 활동의 목적과 연계해 교육적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③ 자연보호 등의 자체 교육적 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b>6) 활동 지도자 자격</b>				
배치된 활동지도자는 자격과 학생 지도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				
점검자 : 교사				(서명)



### ❖ [가정통신문 예시]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출처: 서울시교육청 서식 인용)

학교 마크 202○학년도	슬기롭고(智) 성실하며(誠) 튼튼한(體) 어린이	특수학급
	<b>202○학년도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안내</b>	

202○학년도 특수학급 운영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서를 00월 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 00. 00. (수) 09:00~15:00(도착 시각은 교통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장 소 : 00체험학습장 (경기도 광주시)
- 세부 계획
 

시간	내용
	인원 점검(출결 확인), 안전 지도
	인원 점검 및 출발, 학교 도착

※ 상기 일정은 학습장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간편복, 운동화, 점심 도시락, 식수, 음료, 간식 약간, 개인 돗자리, 화장지, 물티슈, 비닐봉지(쓰레기 회수용), 마스크, 멀미약(아침 식사 후 미리 준비)
- 참가비: 없음(교통비, 체험비는 특수학급 운영비에서 지원합니다.)
- 참고 사항
  - 행사 당일 비가 오더라도 체험학습은 실시합니다.
  - 학교 도착 예정 시간은 교통 사정에 따라 다소 이르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감염병 방역 수칙 및 안전 교육은 00월 00에 실시 예정입니다.

202○. 00. 00.  
○○학교장

----- 절 ----- 취 ----- 선 -----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참가 희망 조사서**

학년 반 번호	이름	참가 여부(○, ×)	학부모 확인	비고
- ( )			(인)	불참 시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귀하

**Tip** ▶ 학년초 교육계획에 포함되어 안내한 경우 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생략 가능



## ❖ [체크리스트 예시] 현장체험학습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를 위한 체크리스트

(출처: 서울시교육청)

## 현장체험학습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를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사항	확인	비고
특수교육 대상학생 특성		이동상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멀미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변처리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복용하는 약	<input type="checkbox"/>	
		주의해야 할 특성	<input type="checkbox"/>	※ 장애 및 행동 특성 등
지원 방법	이동 지원 및 편의 시설	교통 수단 및 이동 방법 확인	<input type="checkbox"/>	
		엘리베이터 유무	<input type="checkbox"/>	
		계단 외 이동 통로 여부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용 화장실 여부	<input type="checkbox"/>	
		점자블록 유무	<input type="checkbox"/>	
		안전 손잡이 설치 유무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설치 유무	<input type="checkbox"/>	
	활동 지원	지원인력 동행 여부	<input type="checkbox"/>	※ 필요 시 1일 지원인력 채용 후 지원 가능
		짝 배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현장 강사에게 학생 정보 전달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비상연락처 등이 기록된 이름표 준비	<input type="checkbox"/>		
	이동 시 이탈이나 낙오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경련 등 응급상황 시 처치 요령 숙지	<input type="checkbox"/>		

# 5

##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





## 5.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



### ❖ 관련법

- ③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③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 관련문서

- ③ 2024 유치원 방과후과정 길라잡이
- ③ 2026 방과후 돌봄 길라잡이
- ③ 2026 중등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 ❖ 유의사항

- ③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에서 100% 보전 가능
- ③ 수강료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
- ③ 강사선정위원회에 특수교사가 참석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특수교육**

- ◆ [기안문]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 [계획서]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 [서식] 방과후학교 운영 일지
- ◆ [서식] 방과후학교 출석부
- ◆ [서식] 방과후학교 강사 출근부
- ◆ [서식]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설문지 (학부모용)
- ◆ [공고문]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모집 공고문
- ◆ [계획서]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 ❖ [기안문 예시]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 1.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000(202○.\*.\*) 202○ 서울특수교육

나.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000(202○.\*.\*) 202○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계획

2. 202○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1부.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비공개(6)



❖ [계획서 예시]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202○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학교

## I 근거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 202○ 서울특수교육(202○. \*. \*\*.)
- (중등)2026 중등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 II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소질.적성 계발
-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 능력 신장

## III 방침

- (예산)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금은 강사비 및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 가능
- (프로그램 개설)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운영하며,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계 운영 가능



- (참여원칙)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에서 100% 보전 가능
- (수강료 원칙) 수강료는 강사비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서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책정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부서의 조직, 강사 선정, 수강료 책정 등의 주요 사항은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운영
- (운영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과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1시간 수업은 00분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절하여 운영
- 연간계획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2026 중등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의거하여 운영

## IV 세부운영계획

### 1. 프로그램 수요조사

가. 조사기간: 202○년도 만족도 조사 시 차기 학년도 수요 조사 병행

나. 조사내용: 희망 프로그램, 운영기간, 운영시간 등

다. 조사방법: 설문지, 가정통신문

라. 수요조사 결과(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총 00명 중 00명 응답)

연번	희망프로그램	1지망	2지망	3지망	운영기간	
					학기중	방학중
1	미술놀이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2	음악놀이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3	요리활동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 2. 프로그램 개설

연번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요일	시간	회기	인원	장소
1							
2							
3							

## 3. 방과후학교 운영 관리

- 가. 교사, 학부모, 강사는 서로 협력하여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사고 등에 유의
- 나. 강사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수시로 담당교사와 협의하고 공유하여 효과적인 학생 지도가 되도록 운영
- 다. 학생 또는 학부모 설문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4. 강사의 임용 및 관리

가. 강사의 자격

- 운영부서 관련 자격 소지자 (예) 컴퓨터반 : 컴퓨터 관련 자격 소지자
- 해당분야 대학졸업자, 기술.기능 보유자
- 교사자격 소지자 또는 현직 교사 중 해당 분야 유경력자

나. 기타 강사의 임용 및 관리: 「2026 중등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따름

다. 강사 선정

프로그램명	이름	최종학력, 전공 및 자격증

**Tip**

〈현직교원〉을 강사로 임용하는 경우, ① 정규수업, 교무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과도한 프로그램을 담당해서는 안되고, ② 현직교원의 방과후학교 수업시수는 정규수업 담당시수(실수업시수)의 30% 이내(방학기간은 담당수업시수의 1.3배 이내) 준수해야 합니다.



## 5. 교육활동 발표 및 수업 공개

부서명	대상학년	일시	장 소

### Tip

교내 일반 방과후학교 공개수업 계획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공개수업을 함께 계획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6. 방과후학교 평가 계획

평가 분야	평가 내용	평가시기	평가자
프로그램 운영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 전개, 정리, 만족도 분야에서 평가</li> <li>- 학습목표 제시, 동기유발, 이해하기 쉬운 설명 등</li> <li>※일반 방과후 공개수업 일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음</li> </ul>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li> <li>-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만족도</li> <li>- 강사 만족도(교수방법, 내용의 충실성, 전문성 등)</li> <li>○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만족도 조사</li> </ul>		
자체 점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학습 계획 등</li> </ul>	학년말 1회	교원

※ 학교 교육과정 상황에 따라 시기가 조절될 수 있음.

**7.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관리**

<b>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학교 활동 중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 예방</li> <li>○ 활동 중 혹은 귀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교내외의 폭력, 유괴, 성폭력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li> </ul>	
<b>방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생활지도 및 방과후학교 교실의 관리 철저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li> <li>○ (초등) 방과후학교의 학교 일과 시간 내 운영으로 유괴 및 폭력 등의 예방</li> <li>○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조치 및 연락 체계 강화</li> <li>○ 정해진 시간에 귀가 지도하고 부모님과 긴밀한 연락체제 구축</li> </ul>	
<b>방법</b>	방과후학교 강사 연수 (연 2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학교 강사 교내 명찰패용</li> <li>- 연2회 강사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안전예방 교육</li> <li>- 방과후학교 활동 중에 학생이 혼자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지도</li> </ul>
	안전귀가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학교 종료 후 귀가 지도는 담당 강사와 협력하여 실시</li> <li>- 프로그램 종료 후에 학생이 교실에 남아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li> <li>- 하굣길 안전 교육 및 안전 귀가 지도 실시</li> <li>- 학교보안관과 CCTV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대비</li> </ul>
	생활지도	<p>학생 특성 및 지도 방법, 지도 범위 등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사는 학생들의 올바른 수업 참여 태도 및 생활 태도 지도</li> <li>-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 평소 교실을 청결하게 유지</li> <li>- 강사는 본인의 활동 장소 관리 및 에너지절약 이행 수시 점검</li> </ul>
	지원인력 활용	<p>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지요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를 방과후 학교 지원인력으로 활용 가능</p>



## 8. 연간 추진 일정(안)

순	세부 절차	내 용	추진 일정
1	운영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교육지원청 제출	3월
2	세부계획 수립	· 교부된 예산에 따라 운영 횟수, 강사비, 재료비, 수강료 등 세부계획 수립 · 강사자격, 구비서류 확인	3월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심의 (수강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	4월 초
4	수강신청	· 가정통신문 배부, 회수	3월 중순
5	강사 임용	· 강사모집 공고(서울특별시교육청) - 1차 서류평가(3배수 선정) - 2차 면접 · 계약 체결 · 강사 복무 등 사전 교육	3월
6	교육활동 전개	· 교육활동 관리 · 활동일지 기록 · 강사 출근부, 학생 출석부 관리 · 강사비 지급	4월~12월
7	공개 수업	· (필요시)부서별 학부모 공개수업 실시	연중
8	평가	· (필요시)방과후학교 공개수업 · 학기별 학생 평가 ·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 내년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반영 (프로그램 및 요일, 시간 편성)	12월 4주



## V 예산운영계획

- 총액 : 금0,000,000원(금 원)
- 산출내역

강좌명	운영비 지출 계획			학생부담액	비고
	강사비	시간당 00원		없음	본교 방과후학교 강사비에 준하여 강사비 책정
	재료비	1인당 00원			
	고용보험료				
	강사비	시간당 00원			
	재료비	1인당 00원			
	고용보험료				
총액					

※ 예산은 교육청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여 편성함.

※ 내부 강사는 고용보험료 지출하지 않음.

## VI 기대효과

-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에 기여
-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및 기능 신장



### ❖ [운영일지 예시] 방과후학교 운영 일지

## 202○학년도 ( )부 방과후학교 운영일지



프로그램명		확인		강사 (인)	업무담당자 (인)
회	월 일	지도시간 (시작~종료)	주요 활동 내용		특 이 사 항
1					
2					
3					
4					
5					

#### ※ 방과후학교 운영 일지 활용

1. 학교와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춰 특수교사가 일지 양식을 작성·관리한다.
2. 강사는 매일 교육활동내용, 지도상의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다.
3. 필요한 매수만큼 철하고 앞면에는 학생 출석부, 차시별 교육계획을 첨부한다.
4. 활동 종료 후 학생 개인별 총괄 평가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출석부 서식] 방과후학교 출석부

202○학년도 ( 부서명 ) 방과후학교 출석부(○학기)



- 기간: 202○년 ○월 ○일 ~ 202○년 ○월 ○일
- 강사명: (인)

번	반	번호	이름	연락처	수업일 및 요일												비고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 출석부의 작성 시 유의 사항

- 1) 매 시간 출결 상황을 확인하여 지각·결석생이 있을 시는 그 사유를 파악한 후 <비고란>에 사유를 기록 후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및 학부모에게 통보
- 2) 출석-○, 결석-x, 지각-∅, 조퇴-△



❖ [출근부 서식] 방과후학교 강사 출근부

202○학년도 방과후학교 ( )부 강사 출근부



( )월											
	일 자	1	2	3	4	5	6	7	8	9	10
성 명											
성명											
확인											
	일 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성 명											
성명											
확인											
	일 자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성 명											
성명											
확인											
	일 자	31									
성 명											
성명											
확인											
										출근일 ( )일	
										출근시간 ( )시간	
위 사실을 확인함.											
202○. . .											
확 인 자 교사 (인)											



## ❖ [서식]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설문지(학부모용)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우리 학교 교육 발전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설문은 본교 \*\*반 방과후학교 운영과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학부모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차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학 교 장

## 1.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만족도

문항	설문내용	응답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2	주당 수업 시간(2회, 3시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3	수업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4	수업 환경 및 분위기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5	자녀의 소질 계발과 실력 향상에 도움 되었습니까?					
6	**반 방과후학교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 2. 강사 만족도

프로그램명

강사명

만족도 \ 내용	매우 만족		보통		부족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1.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잘 지켰습니까?						
2. 강사는 성실하게 가르쳤습니까?						
3. 자녀의 소질 계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 강사는 학생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까?						
5. 향후 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시겠습니까?						

## 3. 202○학년도 ◆◆반 방과후학교 개설 희망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3순위



## ❖ [공고문 예시]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모집 공고문

○○학교 공고 제 2020-○○호

# 2020학년도

## ◀ ○○학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모집 공고 ▶

본교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유능한 개인위탁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1. 모집 분야 및 인원

-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부 1명, ○○부 1명

### 2. 지원 자격

-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다. 법령 상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 3. 모집방법 및 일정 : 1차 제안서 심사, 2차 운영능력 심사(수업시연 포함)

일 정		비 고
모집 공고	2020.2.0.(금) ~ 2.00.(목) 12시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정보란>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원서 접수	2020.2.0.(금) ~ 2.00.(목) 14시	- 방법: 전자우편( @ ) - 제출서류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프로그램 운영제안서, 자기소개서 포함)
운영능력 심사 대상자 통보	2020.2.00.(목) 14시 이후	- 제안서 심사에 통과된 자에 한해 프로그램 운영능력 심사 시간 개별 통지
운영능력 심사	2020.2.00.(금) (정확한 시간은 개별 통보)	심사 장소 : 본교 회의실 수업시연(5분) 준비 - 제출서류 1)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1통(해당자에 한함) 2) 경력증명서 또는 실적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결과 발표	2020.2.00.(금) 예정 (합격자 개별 통지)	- 추후 제출 서류 ■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1부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의 건강진단서는 약식이므로 불가능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 4.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2020년 0월 0일(0) ~ 2020년 00월 00(0)

나. 세부사항

프로그램명	정원기준 (명/반당)	강사료 (원/시간)	수업 요일	수업시간	반	대상 학년
○○프로그램	6 (특수교육 대상학생)	원	월	13:10~14:10	A	1~2
				14:10~14:50	B	3~4
				15:00~15:40	C	4~6
○○프로그램	6 (특수교육 대상학생)	원	수	14:00~15:20	A	4~6

#### 5. 기타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강사 선정 후 계약 전까지 필요서류 제출 미비나 연락 두절시 차순위자 채용

마. 문 의 : 1) ○○학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 02-\*\*\*-\*\*\*\*(평일14~16시)

2) 교무실 ☎ 02-\*\*\*-\*\*\*\*

바.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교통편: ① 지하철

② 버스

2020. \*\*. \*\*.

○ ○ 학 교 장





❖ **〈붙임1〉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운영	수강료(월간)		교재 (있을 경우 기재)	교재명(출판사)	예정가격*
	희망요일				
	운영시간	주당 차시			
	재료비예정액	원*			
* 예정가격은 학생이 부담하게 되는 교재의 최고액					
강좌 목표					
주요 교육내용					
주요 강의 방법					
평가 방법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자율적으로 기술					



❖ <붙임2> 자기 소개서

Blank area for self-introduction.



## ❖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예시)

### 가. 관련 근거

-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 제13조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 시행령 제21조

### 나. 목적

- 1)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전일제 교육 및 돌봄을 통해 전인적 발달을 지원한다.
- 2) 교육과 보육의 통합 운영으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 3)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사회참여 증대를 지원한다.

### 다. 운영방침

- 1) 방과후 과정에 강사 1인을 배정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지요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 등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 2) 특수 방과후 과정 운영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일반 방과후 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흥미, 요구 및 발달에 적합한 유아·놀이 중심 돌봄 활동으로 운영한다.
- 4) 특수교사와 특수 방과후 과정 강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각 유아의 개별화교육 목표의 성취 및 안정적인 일과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

### 라. 세부 운영계획

- 1) 운영대상: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유아 중 희망자
- 2) 운영기간: 202○년 3월 ~ 202○년 2월 (유치원 방과후과정반과 동일)  
 평일 7:00~20:00  
 (학부모의 요구 조사 및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치료 등을 고려하여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
- 3) 원아 현황

학급편성	특수에듀케어(○○○반)					
학급인원	○명					
통합학급 배치 현황	○○○반		△△△반		□□□반	
	남	여	남	여	남	여
	○명	○명	○명	○명	○명	○명

- 4) 학급정원: 당해 연도 특수교육대상유아 배치 인원
- 5) 에듀케어 운영
  - 가) 방과후 과정 교실과 일과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교직원 간의 원활한 협의 및 협력교수를 통해 효과적인 통합교육 및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나) 일일교육 및 놀이실행안은 일반 방과후 과정반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6) 연간 운영 일수: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마. 방과후 과정 일과 운영 편성 계획(예시)

시간	활동 내용	비고
07:00~09:00	등원 및 자유놀이	아침 돌봄교실에서 통합운영
09:00 ~ 13:00	교육과정 수업	교육과정 운영에 따름
13:00 ~ 13:10	인사나누기 및 일과 소개	교육과정-방과후 교사 간 유아 상태 및 유의사항 공유
13:10 ~ 13:50	휴식 및 조용한 놀이	휴식·낮잠 탄력 운영
13:50 ~ 14:20	특색활동	참여 수준 및 흥미에 따라 활동 조정
14:30 ~ 15:00	오후 간식	알레르기 및 식생활 유의사항 반영
15:00 ~ 15:10	1차 하원	
15:10 ~ 16:00	오후 바깥놀이(신체활동)	기상 및 안전 상황에 따라 실내활동으로 대체
16:00 ~ 16:10	2차 하원	
16:10 ~ 17:00	책 읽기 및 자유놀이	
17:00 ~ 17:10	3차 하원	
17:10 ~ 20:00	자유놀이 및 귀가	개별 귀가 시간에 맞춰 돌봄 중심으로 운영

※ 일반 방과후과정과 통합 운영하며,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돌봄 여건과 개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음.

### 바. 기타 안내사항

-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미설치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치원 실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일반 방과후 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며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붙임**

**[초등] 2026 방과후·돌봄 길라잡이 참고**

**❖ 늘봄지원센터 및 늘봄지원실 운영(길라잡이 123p)**

**다. 인력 운용**

1) 늘봄지원실장

가) 정의

- 단위학교 방과후·돌봄 업무의 관리자로서 방과후·돌봄의 계획 수립, 편성·운영, 평가 등 방과후·돌봄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연구·조정 업무 총괄하고, 늘봄지원실 인력 등을 지휘·감독하는 인력

나) 자격

- 기존 교원 중 학교의 늘봄지원실장을 담당할 교원을 선발하여, 임기(2년) 동안 교육연구사 신분 부여(전직)
- 임기 종료 후 기존의 교원 직책으로 복귀(재전직)

다) 역할

- 늘봄지원실 업무 총괄
- 유닛교 업무 지원
- ※ 늘봄지원실장 중심으로 특수학급 방과후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 연간 방과후·돌봄 운영 계획\* 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연간 일정, 운영 방법, 방과후·돌봄교실 확보 계획, 프로그램 운영 계획, 운영 시간, 참여 학생 수, 자원봉사자 등 인력 활용 계획, 강사 확보 계획, 급·간식 및 안전 관리 계획, 학부모 안내 및 홍보 계획, 예산 집행 계획 등
- ※ 학교 밖 기관을 활용할 경우, 학교 밖 이동 학생의 동선 및 안전 관리 계획 포함

**❖ 늘봄지원센터 및 늘봄지원실 운영(길라잡이 261p)**



**FAQ**

**5-다. 특수학급 방과후 행정업무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특수학급 방과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늘봄지원실에서는 행정업무(길라잡이 p.122 ~ p.125) 전반을 담당하고, 특수교사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함
- 다만,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은 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음

- 교육적 지원 사례 -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학생 특성, 생활지도 사항, 문제행동 대처방안 등), 프로그램 및 적합한 강사 추천,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제안관련 협조 등

- ※ 늘봄지원실장 중심으로 특수학급 방과후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다만, 늘봄지원실장 미배치교에서는 특수방과후 운영계획 수립, 심의 참여, 강사 선정 등 방과후 교실 기본 방향 수립과 관련된 내용은 유닛교(실장) 연계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내 협의를 통해 추진하되, 협의 절차 없이 교육실무사(늘봄)에게 일방적으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

# 6

## • 장애학생 평가조정





## 6. 장애학생 평가조정



### ❖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 관련자료

- ▶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자료(교육부)
- ▶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평가 도움 자료(교육부)
- ▶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중학교, 고등학교)
-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해설(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 ▶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교육부, 2024)
- ▶ 2026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
- ▶ 서울고교학점제지원센터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과목별 지원자료집



### 예시자료

- ◆ [참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 설정
- ◆ [참고] 학교급별 장애학생 평가조정 관련 지침(서울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 ◆ [평가조정] 시각장애, 지저장애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조정
- ◆ [평가조정] 중간고사 기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조정 계획
- ◆ [학업성적관리규정] 장애학생 평가 관련 학업성적관리규정(교육부)



## ❖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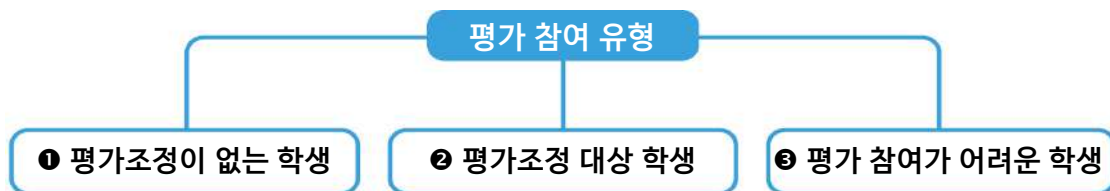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습한 바를 평가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평가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담임교사나 교과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학생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평가 계획과 평가 방법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의 조정이란 평가 문항의 제시 방식, 답안 작성 방식, 평가 환경, 평가 실시 시간 등을 조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평가조정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필요시 개별화교육지원팀에 필요한 평가조정 방안에 관한 협력을 요청해 세부적인 평가 방법과 방향 등을 결정한다.

출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해설(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 1. 장애학생 교과학습 평가의 원칙

- 통합학급의 평가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평가조정’ 지원
- ‘평가조정’을 통해서도 평가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의 평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

## 2. 장애학생 평가 참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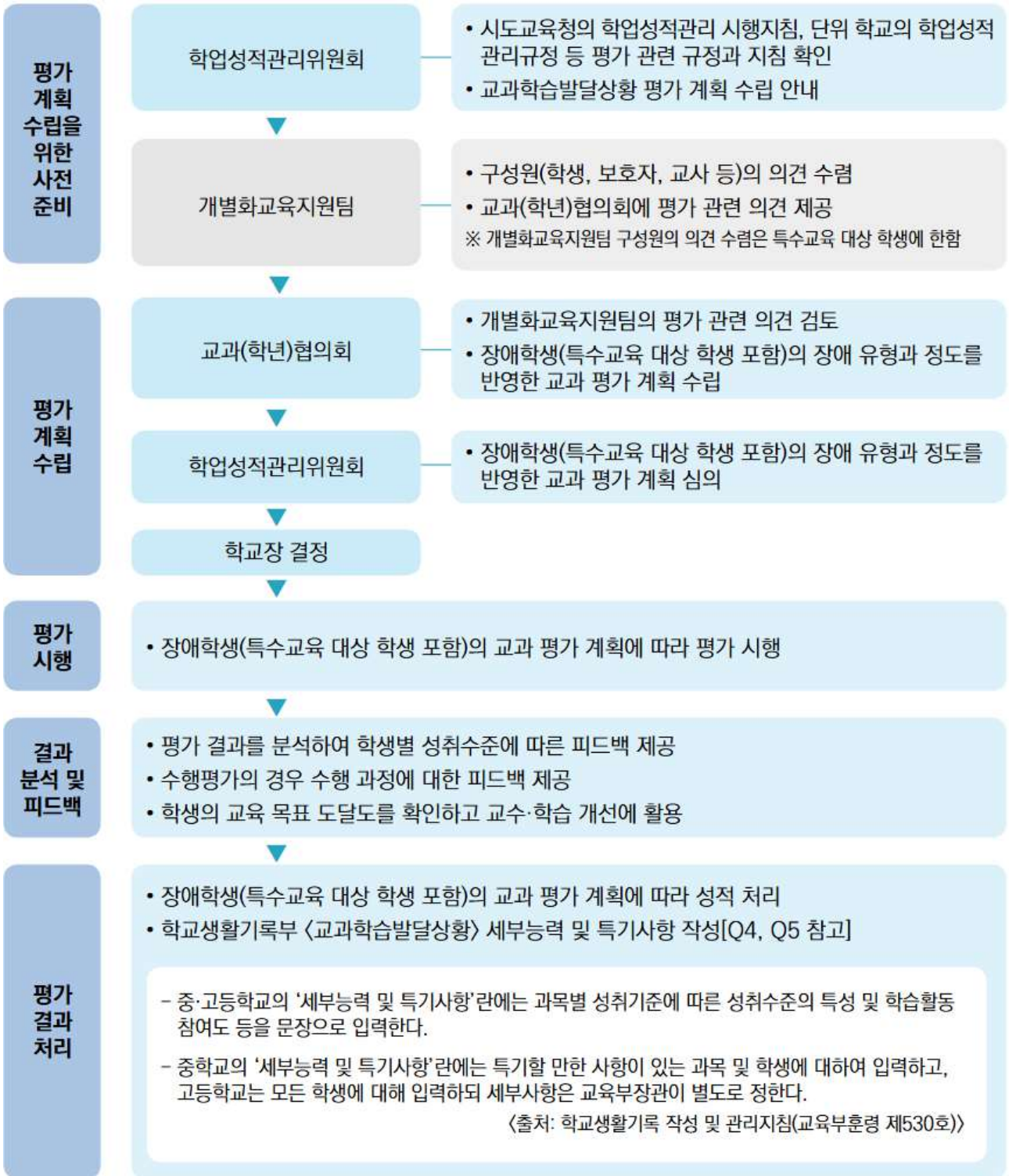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장애학생의 평가 유형에 따라 교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

- ❶ **평가조정이 없는 학생**: 평가조정 없이 통합학급에서 비장애학생과 동일하게 평가 참여
- ❷ **평가조정 대상 학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 기타’에 따라 평가조정 지원  
※ 평가조정의 예: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공학)기기, 지원인력 배치 등(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2016)참고)
- ❸ **평가 참여가 어려운 학생**: 장애가 심하여 평가조정을 하여도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 기타’에 근거하여 ‘인정점 부여’를 할 수 있음

출처: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자료(교육부)



### 3. 장애학생 평가 운영 절차



※ 장애학생 평가 운영 절차 중 개별화교육지원팀 관련 절차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한하여 실시함  
출처: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평가 도움 자료(교육부)

**Tip**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가조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학생이 학습한 것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참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 설정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해설)

###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2. ③ 나. 1)

가)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점 취득을 위해 이수 기준이 적용되고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가 되어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예방 지도와 보충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방 지도는 미도달 예상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실시하는 학습 관리와 지원에 초점을 둔다. 수업 중 지도나 방과 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을 예방 지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기 말에 미이수 과목이 있는 학생은 보충 지도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보충 지도는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보충 학습, 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학점이수 인정기준 안내」 등 교육부장관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단,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 설정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와 교과 협의회를 통해 선정한다.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에는 교과별 담당 교사와 특수교사가 협의하여 별도의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출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해설 p214



■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보충지도**

-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 이므로 장애특성과 정도를 반영하여 별도의 과목 이수기준 적용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이수기준 설정, 운영 방법) 가능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건강장애 원격수업 및 병원학급 등 위탁교육 또는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에서 제외

**출처: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지원자료 [바로가기]**

구분	학점이수 인정 기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추가학습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여 운영)	비고
	출석률 (과목 출석률 2/3 이상)	학업 성취율 (학업 성취율 40% 이상)	이수기준 (총 보충지도 운영 시수의 2/3 이상 참여)	운영 방법 (예방지도 연계비율, 정서지원 제한 등)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이수기준 등 적용 가능 경우
특수교육 대상학생	별도 적용 가능 (해당 학년 수업 일수의 2/3)	별도 적용 가능 미적용 가능	별도 적용 가능 미적용 가능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기준, 운영 방법(예방지도 연계비율,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 대면지도 포함 여부 등)		-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 안내 예정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제외		-	건강장애 원격수업 및 병원학급 등 위탁교육 또는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출처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 151p



### ❖ [참고] 학교급별 장애학생 평가조정 관련 지침(서울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제15조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장애학생이 평가를 받을 때에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출처: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2026 서울시교육청)

**제29조(장애학생 평가조정)** ① 학교장은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장애학생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1.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시하고, 필요 시 음성 평가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한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 장애학생을 위해 확대 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2.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3.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③ 학생이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출처: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2026)



❖ [평가조정 예시] **고등학교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생 사례**

• 1학기 교과 평가 계획(안)

학년	반	번호	학생명	배치 유형	평가 참여 교과	장애 정도 및 학습 방법
0	0	0	000	일반 학급	모든 교과 평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쁜 눈의 시력이 0.02</li> <li>- 개인 확대경, 휴대용 독서확대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활용</li> <li>- 책과의 거리가 근거리(5~10cm 이내)여야 독서 가능</li> <li>- 수업 중 칠판은 망원경을 사용함</li> <li>- 평가시 활동보조원의 지원이 필요함</li> </ul>
평가 참여 유형				평가조정 대상자		
구분		평가조정방법				
지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고사실에서 평가</li> <li>- 확대 독서기 사용</li> <li>- 대독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MR 카드 대필 필요</li> <li>- 시험시간 1.5배 연장</li> </ul>	
수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술평가 중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 1.5배 시간 연장 필요.</li> <li>- 시각적 변별을 요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있음.</li> <li>- 평가 제시 및 반응 형태, 시간, 평가 조건 및 절차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li> </ul> <p><b>&lt;과목별 평가조정 사항&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 - 논술평가시 1.5배 시간 연장</li> <li>• 영어 - 지필로 하는 영어 작문, 어휘평가 시 1.5배 시간 연장</li> <li>• 한국사 - sns홍보하기, 문화재 비평문 쓰기, 문호 개방에 대한 주장문 쓰기, 탐구활동지 작성 등 시력이 요하는 과제일 경우 1.5배 시간 연장</li> <li>• 통합사회 - 논술형 평가(1, 2) 시 1.5배 시간 연장 필요</li> <li>• 통합과학 - 논술형 평가(탐구보고서 I, II / 수업활동평가) 1.5배 시간 연장</li> <li>• 체육 - 배드민턴: 시각장애로 인하여 구기종목에 어려움이 있음. 배드민턴 셔틀콕 변별에 어려움 → 제시 및 반응 형태, 시간, 평가 관련 조건 및 절차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 필요. 논술형 평가 시 1.5배 시간 연장</li> <li>• 미술 - 시각을 요하는 수행평가 시 1.5배 시간 연장</li> <li>• 과학탐구실험 - 시각장애로 인하여 과학 실험 참여 및 결과를 시각적으로 변별이 어려움. 평가 관련 제시 및 반응 형태, 시간, 평가 관련 조건 및 절차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 필요</li> </ul>				

출처: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평가 도움 자료(교육부)



### ❖ [평가조정 예시]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조정(출처: 교육부)

#### • 1학기 교과 평가 계획(안)

학년	반	번호	학생명	배치 유형	평가 참여 여부	장애 정도
0	0	0	000	특수 학급 (시간제)	부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장애(중증)</li> <li>- 간단한 몸짓 상징이나 지시어를 이해함</li> <li>-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여 시험문제 이해 및 답안지 작성이 어려움</li> </ul>
구분		평가 시행 및 채점 방법				
지필평가	<p>예시1) 인정점을 부여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평가함</p> <p>예시2) 별도의 고사실에서 평가, 대독·대필</p>					
수행평가	<p><b>【통합학급 수업 참여 교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평가의 세부 영역[연주-가창(50%), 감상(50%-논술)] 중 감상영역은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평가하며, 연주-가창은 수행 결과에 따라 평가</li> </ul> </li> <li>•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평가의 세부 영역[표현-주제와 조형(40%), 표현-평면표현(35%), 감상-작품성 참조고서(25%-논술)] 중 감상영역은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평가하며, 표현영역은 수행 결과에 따라 평가</li> </ul> </li> <li>•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평가의 세부 영역[운동-줄넘기(20%), 운동-PAPS(30%), 스포츠-배구(40%), 표현-체조(10%)] 수행 결과에 따라 평가</li> </ul> </li> </ul> <p><b>【특수학급 수업 참여 교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과학, 한국사</li> <li>- 인정점을 부여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평가함</li> </ul>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p><b>【통합학급 수업 참여 교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담당교사가 학생의 수업 중 평가와 관찰을 통해 파악된 학생의 학습과 성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li> </ul> <p><b>【특수학급 수업 참여 교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사가 학생의 수업 중 평가와 관찰을 통해 파악된 학생의 학습과 성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교과담당교사에게 제공함</li> </ul>					

출처: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평가 도움 자료(교육부)



❖ [평가조정 예시] 중간고사 기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조정 계획

## 1학기 정기(중간)고사 특수교육대상자 평가 조정 및 시감 계획

- 기간: 2020. \*. \*\*. (○) ~ 2020. \*. \*\*. (○)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4명
- 평가 조정 내용

연번	대상 학생		평가조정 영역	평가조정 유형	평가조정 내용
	학년반	성명			
1			환경조정	별도장소	○○○실
			시간조정	시간연장	1.5배 시간부여
			반응형태 조정	답안지 이기요원 배치	사회복무요원 배치
2			환경조정	별도장소	특수학급
3					
4					

4. 평가조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 시감 계획

가. 시감 교사: 표 참조

※ **장애학생 평가조정(시간 연장)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시감 교사는 1회 시감을 2회 시감으로 인정한다.**

나. 시감 지원: 사회복무요원 1명

다. 시감 일정

날짜 시간	0월 00일(○)	0월 00일(○)	0월 00일(○)	0월 00일(○)	0월 00일(○)
1교시	영어(03) :50분(75분)	수학(02) :50분(75분)	통합과학(06) :40분(60분)	국어(01) :50분(75분)	통합사회(05) :40분(60분)
시험시간	13:20-14:10	13:20-14:10	13:20-14:10	13:20-14:10	13:20-14:10
시간조정	13:20-14:35	13:20-14:35	13:20-14:30	13:20-14:35	13:20-14:30
시감교사	○○○	△△△			
2교시			한국사(04) :40분(60분)		
시험시간			14:30-15:30		
시감교사			○○○		



## ❖ [학업성적관리규정 예시] 장애학생 평가 관련 학업성적관리규정(출처: 교육부)

### 제00조(기타 성적처리)

- ①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기타 신체부상으로 인한 학생이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 응시가 불가능한 영역의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 학생과 형평성 및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 응시가 불가능한 영역 성적 처리(예시)

##### [예시 1] 수행평가의 일부 영역에 점수가 있는 경우

$$\text{점수} = \frac{\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기본점수}}{\text{수행평가 참여 영역 배점 총점}} + \frac{\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 (기본점수 제외)}}{\text{수행평가 참여 영역 배점 총점}} \times \frac{\text{해당학생 수행평가 참여 영역 득점 총점}}{\text{수행평가 참여 영역 배점 총점}}$$

##### [예시 2] 수행평가의 영역에 점수가 없는 경우

$$\text{점수} = \frac{\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기본점수}}{\text{수행평가 참여 영역 배점 총점}} + \frac{\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 (기본점수 제외)}}{\text{수행평가 참여 영역 배점 총점}} \times \frac{\text{해당학생 지필평가 득점}}{\text{지필평가 배점 총점}}$$

##### [예시 3] 수행평가 100%의 경우에 점수가 없는 경우

$$\text{영역별 점수} = \frac{\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text{수행평가 참여 영역 배점 총점}} \times \frac{\text{해당학생 논술형 평가 영역 득점}}{\text{논술형 평가 영역 총점}}$$

- ② 장애학생 평가조정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증빙자료는 필요 시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공학) 기기, 보조인력 지원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 (가)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음성 평가 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한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확대독서기(개인자침 가능) 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 (나)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 (다)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 (2)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제00조(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평가 및 성적처리)

- 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평가는 동일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 ② 평가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00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제시된 장애학생 평가조정사항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추가 조정 사항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③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조정 등을 통해서도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 비율 등은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일반 학생과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④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평가 내용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출처: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자료(교육부)

2026 통합교육 업무 지원  
한 권에 담은 통합교육 실행 도움 자료



# 7

##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계획





## 7.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 계획



### ▶ 선생님들께

특수교육지원인력은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지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통합참여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개별화지원팀 협의를 통한 지원내용, 방법 및 시간 등을 기본으로 당해연도 지원인력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아래 계획과 각종 양식을 참고하시어 학교 실정에 맞는 단위 학교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이 각자의 요구에 맞는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제시한 예시자료는 필수문서가 아님)

### ❖ 관련법

-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 예시자료

- ◆ [계획서]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 계획
- ◆ [기안문] 사회복무요원 배치 요청
- ◆ [의견서] 사회복무요원 우선 배치 요청 의견서
- ◆ [기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근무시간 변경 신청)
- ◆ [기안문] 사회복무요원 방학 중 복무(근무지정 배치)
- ◆ [기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특별휴가 부여)
- ◆ [기안문] 외부 지원인력 채용
- ◆ [기안문] 일일지원인력 인건비 품의(재정문서)
- ◆ [서식] 외부지원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 [서식] 외부지원인력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 [서식] 외부지원인력 사전교육 및 서약서
- ◆ [기안문]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 ◆ [계획서]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 ◆ [서식] 자원봉사자 위촉장
- ◆ [서식] 자원봉사자 근무상황부
- ◆ [연수자료] 특수교육지원인력 학교 자체 연수 내용1
- ◆ [연수자료] 특수교육지원인력 학교 자체 연수 내용2
- ◆ [서식] 특수교육지원인력 활동일지



### ❖ 특수교육지원인력 유형

<b>특수교육실무사</b>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자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교로 배치된 인력
<b>사회복무요원</b>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실시되는 장애학생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으로 병무청에서 교육청 배치 후 각 학교로 근무 지정된 인력
<b>특수교육대상학생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b>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활동 참여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시간제)지원인력
<b>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학생학습도우미 : 자치구에서 신청 학교 중 선정 예산 지원인력</li> <li>-대학(원)생 교직과목 실습이수자 : 봉사학생으로 봉사 시간에 대한 학교장 승인 필요(대학교와 연계 가능)</li> <li>-자원봉사자 : 자발적 신청에 의해 봉사하는 인력</li> </ul>



❖ [계획서 예시]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 계획

# 202○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 계획(안)



○○학교

## I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경우**
- 2026 서울특수교육(공문 참고)

## II 목적

- 특수교육지원인력의 교육 및 학교 활동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적응 강화

## III 방침

- (유형)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등을 총칭함
- (역할) 개별화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학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생활 전반에 요구되는 활동을 지원
- (배정)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결과에 따라 개별 학생의 지원 시간,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을 결정
- (역량강화) 특수교육지원인력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
- (추가 지원) 추가로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지원인력(예: 구청 학습도우미,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등),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등 적극 활용



- (시간제 인력) 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현장체험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교육활동에 (일일)지원인력을 이용할 수 있음
- (정보보호) 특수교육지원인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 규정 및 지침 준수
- (대체 인력풀 활용) 특수교육실무사의 결원, 휴가,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필요 시 즉시 충원, 업무 공백 없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채용공고 및 이에 상응하는 면접, 서류 심사 등 생략 가능)
  - 서울교육일자리포털 인력풀 탑재 (<https://work.sen.go.kr>)
- (평가) 특수교육실무사의 근무성적평가는 본교의 교육공무직 근무성적평가와 함께 연2회 실시(8월, 2월)

## IV 세부운영계획

### 1. 특수교육지원인력 현황

지원인력 유형	성명	성별	연수명(이수 시간)	현임교 배치일	비고 (소집해제일 등)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기타(예:학습도우미)					

※ 필요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을 위한 외부 지원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 2. 특수교육지원인력 복무관리

- 가.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채용 및 복무사항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 인사 관리 규정과 근로 계약에 따라 처리
- 나. 특수교육실무사는 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현장학습 등의 활동으로 시간 외 근무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 다. 특수교육실무사의 방학 중 근무일은 연간 총 5일로 학교재량에 의해 조정되며 특수학급 지원 업무 수행



### 3.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 가. 지원 배정

- 1) 특수교육지원인력의 학생별 지원과목 및 시간은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안내
- 2)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와 개별학생의 장애 정도(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3) 현장체험학습, 수영교육, 학교 행사, 외부 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에 따라 지원 시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4) 사회복무요원은 성별(남학생에게 배정)을 검토하여 배치
- 5)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혹은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지원시간, 본교의 배정 원칙 등을 안내하여 지원을 받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보호자 등이 각 학교의 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나. 특수교육지원인력별 운영 시간표

(특수교육실무사 ○○○)

구분	2025. 3. 00 ~ 2025. 3. 00				총( )시간
	월	화	수	목	금
등교 자습시간	김00 : 등교 및 자습지원				
1교시	이00:국어(도서관)	권00:사회		권00:사회	이00:음악(음악실)
2교시	박00:영어(영어1)	김00:체육(강당)	박00:미술(교실)	박00:체육(운동장)	박00:창체(필로티)
3교시			박00:미술(강당)		
점심시간1	김00 (식사, 화장실, 양치)				
4교시	박00 과학(과학실)				
점심시간2					이00: 영어(영어실)
5교시	박00:체(운동장)	이00:dmdkr (dmdkrtlf)		김00:체육(강당)	
6교시				박00:음악(음악)	권00:동아리(5-2)
방과후프로그램		저학년부:미술 (특수학급)	통합동아리 (특수학급)		
하교	이00: 교문		이00: 교문	이00: 돌봄	



#### 4. 특수교육지원인력 주요 역할

- 가. 지원인력은 담당교사가 작성한 교육계획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교사의 교육방침과 지시에 따름
- 나. 지원인력은 교사 고유의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 등을 대신할 수 없음
- 다.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해 학교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관련하여 담당 교사와 수시로 협의

영역	내용
개인 욕구 지원	• 신변처리, 식사 지도, 보조기 착용, 의복 착탈의, 건강 보호, 안전 생활 지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지원 • 수업 시간 이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학교 적응 지원	•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기타	• 교실 환경 정리정돈, 학습 환경 준비 •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 현장체험학습, 소규모테마형교육 여행, 창의적 체험활동, 수련활동 등 학교장이 부여하는 교육활동 관련 업무

#### 5. 연수계획

- 가.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교육지원청 지원인력 연수, 학교 자체 연수 등 활용
- 나. 특수교육실무사는 연 15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고, 사회복지요원은 연 2회 이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이수
- ※ 연수내용: 장애이해교육, 장애학생 인권교육,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심폐소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지원 방법, 복무규정 등

대상	연수 내용
특수교육실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바로가기]</li> <li>•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li> <li>• 교육지원청 지원인력 연수</li> <li>• 학교 자체 연수</li> </ul>
사회복지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교육청별 16시간 이상 직무교육 실시(배치 3개월 이내)</li> <li>*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직무교육(장애인권·직무역량 교육 등) 실시(배치일로부터 1주일 이내 직무연수 실시)</li> <li>•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바로가기]</li> <li>• 사회복지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li> <li>• 월1회 교육연수(사회복무포털에 등록)</li> </ul>
기타 지원인력	• 학교 자체 연수



## 다. 연수 운영 계획(안)



구분	연수 주관	연수주제	연수내용	비고
1	00학교	통합학급 지원	- 본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성 - 통합학급 지원 방법	3월
2	00학교	교과별 수업 지원	- 교과별 수업 지원 방법 안내 - 보조공학기기 관리, AAC 사용 지원	6월
3	00학교	신변처리 등 지원	- 급식 지원 방법 재교육 - 신변처리 지원 방법 재교육	9월
4	00학교	통합교육의 이해	- 통합교육의 목표 및 필요성 - 장애인식개선교육	11월
5	**교육지원청		공문으로 안내	연 4회

**V 기대효과**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통합교육의 효과 극대화
-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적응능력과 교육적 성과 신장



## ❖ [기안문 예시] 사회복지무요원 우선 배치 요청

 (학교마크)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h1 style="font-size: 2em;">○○학교</h1>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
<p>수신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경유)</p> <p>제목 (○○학교)사회복지무요원 우선 배치 요청</p> <hr/> <p>1. 관련: 서울○○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000(202○.**.**)</p> <p>2. 본교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지무요원(1명) 우선 배치를 붙임과 같이 요청합니다.</p> <p>붙임 1. (○○학교)사회복지무요원 배정요청 및 활용계획서 1부. 2. (○○학교)사회복지무요원 우선 배치 요청 의견서 1부. 끝.</p>		
<h2 style="font-size: 2em;">○○학교장</h2>		
<p>수신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p>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전송	/ http://
전화	/	/비공개(6)



❖ [의견서 예시] **사회복무요원 우선 배치 요청 의견서**

## 사회복무요원 우선 배치 요청 의견서

서울00학교에서는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우선 배치를 요청합니다.

본교 상황이 \_\_\_\_\_하여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00학생은\_\_\_\_\_특성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000학생은\_\_\_\_\_특성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학부모님께서도

[사회복무요원] 우선 배치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면 000의 통합교육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활한 통합교육 활동지원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선 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년 00월 00일

0-0담임교사	0-0담임교사	0-0특수교사	0-0특수교사	0-0부장교사
000(서명)	000(서명)	000(서명)	000(서명)	000(서명)



## ❖ [기안문 예시]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근무시간 변경 신청)



(학교마크)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서울○○학교



수신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00학교)사회복지무요원 근무시간 변경 신청

### 1. 관련

가. 서울00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000(2020.00.00.)

나. ○○학교-0000(2020.00.00.) ← 통합교육계획 내부결재

2. 본교에 배치된 사회복지무요원이 장애학생 중식지원 활동을 하게 되어 학기 중 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무지	성명 (생년월일)	근무 시간		사유
		현행	변경	
00학교	000 (****. **. **.)	09:00 ~ 18:00	08:30 ~ 16:30	점심시간 중식지원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 http://

전화

/전송

/

@sen.go.kr

/ 비공개(6)



❖ [기안문 예시] 사회복무요원 방학 중 복무(근무지정 배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여름방학 중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정 배치

1. 관련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 1820호)

나. ○○학교-0000(202○.00.00.) ← 여름방학 계획

2. 본교 사회복무요원(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지원 업무)의 여름방학 중 복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배치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 \*\*. \*\*. ~ 202○. \*\*. \*\*. (여름방학)

나. 대상: 사회복무요원 ○○○

다. 근무시간: 08:30~17:30 ※방학기간 중 장애학생 점심시간 지원 중단에 따름

라. 근무장소: 도서실 및 돌봄교실

마. 임무내용: 도서대출 및 정리 업무 보조, 돌봄교실 점심배식 보조, 특수학급 교재 교구 정리

바. 복무담당: 행정실장(복무상황부 행정실 비치)

사. 복무원칙: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준하되 복무 기관인 학교복무규 정에 따름. 끝.

Tip

사회복무요원의 방학 중 복무담당자는 행정실장, 교감, 교무실 근무자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정함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	http://
전화	/전송	@sen.go.kr / 비공개(6)



## ❖ [기안문 예시] 사회복지요원 복무(특별휴가 부여)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 자율휴업일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특별휴가 부여

### 1. 관련

가.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5조(특별휴가)

나. ○○○학교-0000(2020.\*\*.\*\*.) ← 학교교육계획 내부결재

2. 본교 사회복지요원이 장애학생활동지원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교 자율휴업일을 맞아 특별휴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사회복지요원)

나. 일자 : 2020. \*\*. \*\*. (요일) (1일)

다. 휴가 제공 사유: 근무성적 우수. 끝.

### Tip

- 1)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5조(특별휴가)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특별휴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음
- 2)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지요원 특별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복무기관의 장은 개교기념일 등 복무기관 휴무로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특별휴가 적극 실시 권장함.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비공개(6)
	/	@sen.go.kr



❖ [기안문 예시] 외부 지원인력 채용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수교육대상자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일일)지원인력 채용

1. 관련

가.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0000(2020.\*\*.\*\*.) ←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관련 공문

나. ○○○학교-0000(2020.\*\*.\*\*.) ← 생존수영 계획이 포함된 내부결재

2. 3학년 1반 생존수영교육 실시 계획에 따라 (일일)지원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가.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근로기간	근로사항	장소
홍길동	남		2020.**.**. ~ **.**.**. 09:00-12:00 (일일 3시간)	특수교육대상자 (3-1 ○○○) 생존수영교육활동 등 보 조	○○수영장 및 본교 특수학급

나. 채용 예정 지원인력의 범죄조회 및 성범죄 전력 조회 별도 실시. 끝.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sen.go.kr

/ 비공개(6)



## ❖ [인건비 지급 기안문 예시] 일일지원인력 인건비 품의(재정문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h1 style="font-size: 2em;">○○학교</h1>
 서울교육 서울교육 서울교육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일일)지원인력 인건비 지급	
1. 관련	
가.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0000(2020.**.**.)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관련 공문	
나. 00학교-0000(2020.**.**.)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채용 기안	
2. 현장체험학습 (일일)지원인력(홍○○)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0.**.**.(*), 09:00 ~ 18:00	
나. 장소: ○○공원	
다. 지원대상: *학년 *반 ○○○	
라. 예산총액: 금97,120원(금구만칠천일백이십원)	
마. 산출내역: 12,140원*8시간=97,120원.	
붙임 1. 일용임금지급품의서 1부.	
2. 수당지급조서 1부.	
3. 현장체험학습 지원인력 근무 확인서(근무 증빙자료) 1부. 끝.	
교사	교감
협조자	교장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sen.go.kr /비공개(6)





## ❖ [서약서 예시] 외부지원인력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반드시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탁(제공)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엄중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 주 소 :  
                   학 교 명 : ○○○학교  
                   학 교 장 :                   (인)

( 서 약 자 ) 주 소 :  
                   성 명 :                   (인)



❖ [사전교육 예시] 외부지원인력 사전교육 및 서약서

2020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인력 사전교육 

○○학교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인력으로 바쁜 시간을 내주어 기꺼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를 겪는 학생들은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따라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화’된 교육 및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활동에 지원인력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면 본교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 있고 즐거운 체험활동이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유의미한 체험활동이 되기 위해 아래 몇 가지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담당하는 학생의 안전을 꼭 지켜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거나 옆에 친구를 공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만지는 등 돌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잘하다가도 방심하는 짧은 그 순간에 항상 사고가 일어나므로 활동을 마치는 순간까지 긴장감을 갖고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둘째, 담당하는 학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잠깐 사이에 학생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을 잃어버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성폭행, 장기 미아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항상 담당하는 학생과 함께 하며 절대 학생을 혼자 두지 마세요!

**셋째, 학생을 잃어버렸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 신속히 담임교사나 주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넷째, 책임감과 적극성을 갖고 최선을로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담임교사가 지원인력 여러분에게 학생을 맡길 때는 학생을 최선을로 도와줄 것이란 신뢰를 전제로 부탁합니다. 학생들이 작은 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책임감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째,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과도한 신체 접촉은 피해주세요!** 활동하면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또 신체적 도움을 주실 땐 불쾌할 수 있을만한 신체 접촉(예: 가슴, 엉덩이 등)은 피해주세요!

지원인력으로서 위 다섯 가지 유의사항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_\_\_\_\_ (인)



## ❖ [기안문 예시]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학교마크)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h1 style="font-size: 2em;">○○학교</h1>	 새교육력 향상! 새교육력 향상!
<p>수신 내부결재 (경유)</p> <p>제목 202○학년도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안)</p>		
<p>1. 관련: 00학교-0000(202○.**.**.) ← <b>통합교육계획</b></p> <p>2. 본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p> <p>가. 자원봉사자 현황: 총00명</p> <p>나. 주요 활동 : 통합학급 수업시간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업 지원, 급식 지원 등</p> <p>다. 운영 기간 : 202○.**.**.~ 202○.**.**.</p>		
<p>붙임 1. 202○학년도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안) 1부.</p> <p>2. (서식) 202○학년도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위촉장 1부. 끝.</p>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비공개(6)
	/	@sen.go.kr



## ❖ [계획서 예시]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202○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안)**

○○학교

**1.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활한 통합교육 지원

**2. 세부 운영 계획****가. 자원봉사자 인적사항 및 봉사 일정**

순	성명	생년월일	봉사 요일 및 시간	봉사 기간	비 고
1					

**나. 봉사 영역**

- 1) 통합학급 담임교사(또는 교과전담교사)가 지도하는 과목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 지원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쉬는 시간 교실 이동 지원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급식 지원

**다. 사전교육 일정**

- 1) 일시: 202○. \*\*. \*\*.(\*) 10:00~12:00
- 2) 강사: 특수학급 교사
- 3) 내용: 자원봉사 내용 및 유의점 안내

**라. 교육봉사자 교육 및 관리**

- 1) 주관리자: ○○○, 부관리자: □□□
- 2) 관리사항: 봉사자 출결사항, 봉사일지 작성, 요일별 교육봉사 일정 및 내용 사전안내, 당일 봉사 현황 및 결과 교류, 피드백 등



❖ [위촉장 예시] 자원봉사자 위촉장

# 위 촉 장

○○학교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000

위 사람을 ○○학교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로 위촉합니다.

(기간: 202○. \*\*. \*\*. ~ 202○. \*\*. \*\*.)

202○년 \*월 \*\*일

○○학교장



❖ [근무상황부 예시] 자원봉사자 근무상황부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봉사내역 (\*\*월)**

자원봉사자 : \*\*\*

담당자 : \*\*\*

시간 요일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근무시간	비고

날짜	1	2	3	4	5	6	7
서명							
담당자 확인							
날짜	8	9	10	11	12	13	14
서명							
담당자 확인							
날짜	15	16	17	18	19	20	21
서명							
담당자 확인							
날짜	22	23	24	25	26	27	28
서명							
담당자 확인							
날짜	29	30	31	특이사항 기재란			
서명							
담당자 확인							
월 결산	총 봉사일수 : (        )일 , 총 봉사시간 : (        )시간						



## ❖ 특수교육지원인력 역할 및 활동 체크리스트(예시)

본 체크리스트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장을 촉진하고 교육과정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직무 점검 도구입니다. 지원인력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교육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지원은 '최소 촉진의 원칙'에 따라 학생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지원인력 성명	(서명)	점검 일자	202 . . . 요일
---------	------	-------	--------------

### 영역 1: 이동 및 등학교 지원

- 등교 직후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1교시 시작 전 통합학급 입실을 완료하도록 확인하였습니까?
- 특수학급에서 통합학급으로 이동 시, 학생이 교실에 정시에 입실했는지 최종 확인하였습니까?
- 특별실, 운동장, 강당 등 이동 수업 시 학생의 곁에서 경로를 안내하고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이동 중 학생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지원하였습니까?
- 이동 지원 시 물리적 부축보다는 학생 스스로 걷고 이동하도록 언어적·시각적 촉구를 우선하였습니까?
- 학생의 하교 여부를 담당 교사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까?

### 영역 2: 수업 및 학습 지원

- 학교 일과 및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학생이 학습 도구(교과서, 필기구 등)를 준비하도록 확인하였습니까?
- 과학 실험: 통합학급 교사의 안내에 따라 실험 도구를 함부로 만지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지원하였습니까?
- 체육 및 음악: 신체 활동 시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생의 뒤편에 위치하여 두 팔을 잡고 동작을 함께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시켰습니까?
- 놀이 지도: 그룹 활동 중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중재하고, 활동 후 정리 정돈을 학생과 함께 수행하였습니까?
- 알림장 쓰기 지원 (단계별 적용):
  - 1단계: 학생 스스로 알림장을 쓰도록 우선 기다려 주었습니까?
  - 2단계: 스스로 쓰기 어려워할 때 내용을 읽어주며 받아쓰도록 유도하였습니까?
  - 3단계: 받아쓰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손을 잡고 함께 쓰는 물리적 보조를 제공하였습니까?
- 어려운 행동 대응: 돌발 상황 발생 시 특수·통합학급교사와 사전에 약속된 매뉴얼에 따라 일관된 방식으로 안전하게 중재하였습니까?

### 영역 3: 급식 지도

- 배식 대기 시 학생이 차례를 지키며 줄을 서서 기다리도록 위치를 지정하고 확인하였습니까?
- 식판을 들고 이동할 때 다른 학생과 부딪히거나 음식을 쏟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까?
- 학생이 급하게 먹지 않도록 식사 속도를 조절해 주었습니까?
- 학생의 개별 특성에 맞는 적정 식사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식 및 식사 과정을 관찰하였습니까?
- 숟가락, 젓가락 등 올바른 식사 도구 사용을 독려하고 식사 중 돌아다니는 등 돌발행동을 제지하였습니까?
- 식사 종료 후 학생 스스로 잔반을 처리하고 지정된 장소에 식판을 반납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영역 4: 학교 행사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 방과 후 수업:** 방과 후 강사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여 학생의 학습 보조 및 교구 준비를 지원하였습니까?
- 교육 환경 관리:**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 제작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까?
- 교실 정돈:** 교육 활동 종료 후 학생과 함께 교실 환경을 정리하고 비품을 정돈하였습니까?
- 행사 및 체험 학습:**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체적 도움을 주어 연습에 능동적으로 참여시켰습니까?
- 교내외 행사 및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지정된 안전 구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찰 및 지원하였습니까?**

#### 영역 5: 행정 및 복무 관리

- 업무 기록:** 당일 근무일지를 일과 시간 내 학생의 안전이 확보된 시간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까?
- 사전 협의:** 결근, 외출, 조퇴, 휴가 등 복무 변동 사항에 대해 담당 교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였습니까?
- 절차 준수:** 상의된 복무 사항에 대해 학교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신청 및 승인을 득하였습니까?
- 비밀 유지:** 학생의 개인정보 및 수업 중 알게 된 학생의 특이사항에 대해 외부 유출 없이, 담당 교사와만 긴밀히 공유하였습니까?

### 7. 종합 의견 및 학생 변화 관찰

당일 발생한 학생의 긍정적 변화, 특이 행동, 건강 상태 및 교사에게 전달할 핵심 사항을 기술하십시오. (내용을 입력하세요)



### ❖ [예시] 특수교육지원인력 학교 자체 연수 내용1

#### 특수교육지원인력 연수 자료(특수교육지원인력의 역할)

시간	활 동 내 용
이동 지원	등교 확인, 1교시 전 통합학급 입실 지도
	특수학급에서 통합학급으로 이동 시 입실 확인
	특별실 및 운동장(강당) 이동 안내 및 확인
	심부름 연습 시 동반 및 지도
	하교 확인
	※ 학생 이동시 최대한 학생 스스로 이동하도록 보조지원 ※ 통합학급의 그룹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
수업 지원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도록 보조지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사의 요청에 따라 지원
	과학실험 : 통합학급 교사의 요청에 따라 보조 지원 - 실험도구를 함부로 만지거나 파손하지 않게 안전주의
	체육 및 음악 활동 : 통합학급 교사의 요청에 따라 보조지원 - 예: 체조할 때 뒤에서 두 팔을 잡고 함께 체조하기 등)
	놀이지도 : 그룹별 놀이에서 문제해결 돕기, 안전지도, 정리지도 보조지원
	수업 중 부적응 행동 발생 시 특수, 통합교사와 협의한 방식으로 부적응 행동에 대처함.
	쓰기가 가능한 학생은 알림장은 스스로 쓰게 하되, 쓰기를 거부할 때에는 지원인력 이 알림장 내용을 읽어주고, 받아쓰도록 하고, 그것조차도 힘이 들 때에는 손을 잡고 알림장을 쓰도록 지원
급식 지도	차례 지키기, 안전하게 식판을 들고 이동하기
	식사량과 속도 조절
	수저 사용해서 식사하기, 돌발행동하지 않기
	다 먹은 식판 치우기, 스스로 자신이 먹은 식판 반납
방과후 지도	방과 후 수업 지원 : 방과 후 강사의 요청에 따라 보조지원
	자료제작 및 교실환경정리 지원 : 학습자료 제작, 교실환경정리
학교행사 및 현장체험 학습 지원	학교행사 학예회, 운동회 연습 보조지원 : 연습 시 신체적 도움을 주어 연습에 함께 동참하도록 지원. 공간 이탈 하지 않도록 지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 특수 및 통합학급 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생 지원
근무상황	학생 하교 후 근무일지 작성
	결근, 외출, 휴가 등의 복무 사항은 담당교사와 상의하고 사전 신청



❖ [예시] 특수교육지원인력 학교 자체 연수 내용2

**특수교육지원인력 연수 자료**

**1.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2. 효과적인 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원리**

- ① 장애학생은 먼저 일반학급의 평범한 한 구성원이 되어 비장애학생과 함께 학교생활을 경험해야 한다.
  - : 장애학생이 소속된 일반학급에서 비장애학생들처럼 한 학급의 구성원이 되어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사나 특수교육 지원인력과 같이 주변에 있는 성인들이 먼저 장애학생을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태도와 상호의존성 혹은 협동을 강조하는 학급경영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이 급우들 사이에서 고립되고 거절되지 않고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을 친구로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사이에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자주 일어나서 사회적 관계, 나아가 우정관계가 계발될 수 있어야 한다.

**3. 교과별 지원 방법**

<b>국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을 들고 발표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li> <li>• 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 정리해 따라하게 한다. 예) 이름을 말하고 싶니?</li> <li>• 발표할 내용을 쉽게 문장으로 요약하여 알려 준다. 예) 제 이름은 000입니다. 라고 발표하자.</li> <li>• 읽기가 어려운 경우, 대신 읽어 주며 내용을 들려준다. (읽기 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책을 대신 읽어 줄 수 있다.)</li> </ul>
<b>수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시범 보여준다.</li> <li>• 문장제 문제를 쉽게 설명해 준다.</li> <li>• 자, 각도기, 등의 사용방법을 따라하게 한다.</li> </ul>
<b>과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지원한다. 예) 실험 시간에 과학 현상을 살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li> <li>• 실험 활동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험 과정을 시범 보이고 따라하게 한다.</li> <li>• 실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이나 실험도구로부터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li> </ul>
<b>체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줄서기나 준비운동 시간에는 가까이에서 시범을 보이도록 한다.</li> <li>• 교사의 시범을 따라 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학생이 교사와 가까이 서게 하고 동작이 안 되는 부분은 손을 잡거나 언어적 촉진을 사용한다.</li> </ul>
<b>음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 부르기를 할 때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아는 부분만이라도 참여하여 부를 수 있게 장애학생의 옆에서 같이 불러주고 부르도록 지원한다.</li> <li>• 리듬악기 연주를 할 때 박자를 맞추어 치는 것을 어려워하는 장애학생이 많으므로 장애학생의 손을 잡고 악기를 함께 친다거나 악기를 쳐야 할 때를 손짓으로 해 주는 형태로 지원한다.</li> <li>• 필기를 해야 하는 경우 이미 쓰여진 것 위에 덮어쓰기를 하거나 적어주는 것을 보고 따라 그리기를 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인다.</li> </ul>
<b>미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학생이 재료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경우 물감대신 크레파스, 풀 대신 유리테이프 등 재료를 바꿔주는 방법으로 지원한다.</li> <li>• 가위질을 어려워하는 경우 대신 가위질을 해주기보다 잘라야 할 것을 잡아주는 등 장애 학생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한다.</li> </ul>



### ❖ [예시] 특수교육지원인력 유치원 자체 연수 내용

#### 유치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을 위한 교육의 예

주제	연수 내용	예시
장애 및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관점 공유</li> <li>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기본 정보 및 현재 발달 수준과 성취해야 하는 교육목표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유치원은 통합유치원입니다. 모든 유아는 장애와 상관없이 우리반 소속이고 활동에 잘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li> <li>○○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파악해서 상호작용을 시도하면 쉽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놀이가 잘 이루어지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도 놀이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조금 떨어져서 지켜봐 주세요.</li> </ul>
유치원 및 통합교육 운영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 경험이 없는 지원인력의 경우, 타학교급과는 다른 유치원만의 수업 형태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li> <li>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합교육 형태와 지원인력의 역할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은 학교와는 달리 쉬는 시간 없이 활동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아가 등원할 때부터 하원할 때까지 모든 시간이 수업시간이라고 생각해주세요.</li> </ul>
유아 수행과 관련된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동 지원 계획이나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유아의 행동을 관찰해야 할 때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역할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는 동화를 듣는 시간에 앉은 자리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듣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리에서 몇 번 일어나는지 수업 후에 기록지에 적어서 알려주세요.</li> </ul>
교사 및 학부모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와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학급 및 유아 지원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특수교사에게 이야기해주세요. 또한 통합학급을 지원할 때에는 통합학급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주세요 합니다.</li> </ul>
교수적 지원을 위한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교육대상유아를 향한 무조건적인 도움을 지양하고 학급 활동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li> <li>특수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활동을 지원할 때 촉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가 손을 씻으러 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아, 물 틀까?’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로 알려주는 것을 언어 촉진이라고 해요. ○○이는 혼자 물을 틀기 어려워하니 유아의 손을 잡고 같이 물을 틀어주세요. 이런 도움을 신체 촉진이라고 해요.</li> <li>○○이가 모든 활동에 혼자 참여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움을 주는 경우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활동 중에 ○○이만 보지 말고 다른 유아 중에도 도움이 필요한 유아가 있는지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하지 물어보고 지원해주세요.</li> </ul>
장애유아가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휠체어나 워커 등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있을 경우 해당 기구 사용법에 대한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는 이동할 때 워커를 사용해요. ○○이가 워커를 사용해서 걸을 때 바닥에 장애물이나 턱이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주의시켜주세요.</li> </ul>
또래 상호작용 및 놀이 촉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과 중에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또래에게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또래의 상호작용에 반응해야 할 때 지원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놀이 중 친구가 ○○에게 말을 걸거나 놀잇감을 주면 대신 대답하지 말고 ○○이가 친구 얼굴을 보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이에게 언어 촉진을 해주세요.</li> </ul>

<국립특수교육원(2018). 『통합유치원 운영모델』>



❖ [활동일지 예시] 특수교육지원인력 활동일지

<b>특수교육지원인력 활동일지</b>										
년 월 주 ( 일 ~ 일 )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인)	
기재 내용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원학생	지원장소	지원학생	지원장소	지원학생	지원장소	지원학생	지원장소	지원학생	지원장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아침 활동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 시간										
5교시										
6교시										
방과후										
특이 사항										

**Tip** 특수교육지원인력 활동일지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활동일지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등에서 일지가 도움 될 수 있으므로 예시로 제시합니다.

8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 8.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 ❖ 용어설명 및 개념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요보호학생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화상 및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3개월 이상의 치료 요구)
병원학교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건강장애학생, 요보호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
원격수업 (꿀맛무지개교실)	건강장애학생(요보호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석 인정 원격수업시스템으로 실시간 원격수업 운영 ※ 학생의 건강 상태 및 치료 일정에 따라 녹화수업 보기 가능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 일반학급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병원 또는 가정에서의 학습지원 가능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교육(지원)청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입교 가능

### ❖ 관련 근거

-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 관련 자료

- ④ 2026 서울특수교육 2-3-2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참고
- ④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④ 2026 꿀맛무지개교실 운영 안내(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
- ④ 꿀맛무지개교실 홈페이지 <http://health.kkulmat.com/>
- ④ 병원학교 홈페이지 <https://hospital.s4u.kr/main.do> 입퇴교 절차 안내 및 필요한 양식 제공
- ④ 담임교사를 위한 건강장애 학생 학교복귀지원 가이드북(교육연구정보원)



### ❖ 관련 업무처리

<p><b>건강장애 선정 (특수교육대상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생, 중학생 : 소속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li> <li>- 고등학생: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li> <li>- 건강장애학생 선정·취소 시 학부모 동의 및 의사 진단서 등 확인</li> <li>※ ‘건강장애’ 선정: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개별 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li> <li>※ 만성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하나 정상 출석이 가능하고,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님</li> <li>※ <b>학교급 진급(초→중, 중→고) 시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선정 받아야 함</b></li> </ul>
<p><b>요보호학생선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생, 중학생 : 소속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에서 선정</li> <li>- 고등학생: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 선정</li> <li>- 심사기준: 교육(지원)청 자체 규정</li> <li>※ 학년이 바뀔 때마다 교육(지원)청 자체 심사를 거쳐 재선정 받아야 함</li> </ul>
<p><b>병원학교 입교 신청</b></p>	<p>병원학교 운영 계획 참고</p> <p>※ <b>학교에서 직접 병원학교로 입교 신청</b></p>
<p><b>꿀맛무지개교실 입교 신청</b></p>	<p>학부모(학생) 신청 → 학교 → 소속 교육(지원)청 →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p> <p>※ 정신질환/정서장애(ADHD, 우울증), 당뇨, 아토피, 뇌전증 등은 입교대상이 아님</p>



#### 예시자료

- ◆ [기안문] 꿀맛무지개교실 입교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및 우선 입교 신청
- ◆ [기안문] 꿀맛무지개교실 전출 알림
- ◆ [기안문] 꿀맛무지개교실 퇴교 요청
- ◆ [학교장 의견서] 요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학교장 의견서



❖ **꿀맛무지개교실 입교 절차(업무 처리)**

대상	건강장애학생		요보호학생
	(신규 또는 학교급이 바뀌는 기선정자)	기선정자	
학부모 (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임교사에게 선정 문의</li> <li>▶ 입교신청서, 진단서, <b>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및 선정·배치 신청 서류 제출</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임교사에게 <b>입교신청서 제출</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임교사에게 <b>입교신청서, 진단서 제출</b></li> </ul>
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꿀맛무지개교실 입교 신청 공문 발송</li> <li>▶ 수신처 -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 - 고등학교: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li> <li>※ 단, <b>신학년 입교기간(2026. 2. 23.(월)~ 3. 13.(금))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경우, 수신처에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 추가(입교일: 3.3.(화)일괄 적용)</b></li> <li>※ <b>신학년 입교기간 이후 상시 입교하는 학생들의 입교일은 공문 접수일로 처리</b></li> <li>※ <b>고등학교 건강장애학생 신규/재 선정 신청 서류는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에도 발송</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li> <li>- <b>입교신청서</b></li> <li>- <b>입교신청자 명단</b></li> <li>- <b>진단서</b></li> <li>- <b>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및 선정·배치 신청서류</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li> <li>- 입교신청서</li> <li>- 입교신청자 명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li> <li>- 입교신청서</li> <li>- 입교신청자 명단</li> <li>- 학교장의견서</li> <li>- 진단서</li> <li>(3개월 이상 치료요함 명시★)</li> </ul>
교육(지원)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신청 공문 발송</li> <li>▶ 수신처: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li> <li>※ <b>우선입교: 신규, 장애유형 변경 대상, 출석일수 부족의 경우 '우선입교' 신청, 추후 선정 여부 공문 제출</b></li> </ul>		
꿀맛무지개 교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학생 입교 처리(학급 및 담임 배정)</li> <li>▶ 꿀맛무지개교실 수강 방법 등 안내(담임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재안내)</li> <li>▶ 매월 출석 상황 통보</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임(당) 교사: 꿀맛무지개교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연계 학생 등록 소속교 교사 연수 수강</li> <li>▶ 학생: 꿀맛무지개교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원격수업 수강</li> </ul>		



## ※ 유의사항

- ① 건강장애(학년이 바뀌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재선정은 하지 않으나, 꼴맞무지개교실은 재입교),  
요보호학생(학년이 바뀔 때마다 요보호대상자로 재선정을 받은 후 꼴맞무지개교실 재입교)
- ② 신청 학생에 한하여 우선 입교 적용 처리(3월 3일부터 수업 수강 가능)  
단, 입교신청서 접수 교육청 선정과정에서 건강장애, 요보호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퇴교  
처리 (→결석 발생 가능)

## ※ 우선입교

- 건강장애학생 선정 과정 중 기일이 소요되어 출석 일수가 부족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입교 신청 가능 (추후 건강장애학생 선정 여부 회신)
- 1학기 개학 전에 입교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선 입교를 적용하여 신청 가능 (추후 건강장애학생  
여부 회신)



❖ [기안문 예시] **꿀맛무지개교실 우선 입교 신청**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꿀맛무지개교실 입교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 및 꿀맛무지개교실 우선 입교 신청

1. 관련: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000(2020.\*\*.\*\*.)
2. 본교 학생의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의뢰서 및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학교명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선정희망영역	신청사유
1					건강장애 또는 요보호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인해 ○○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며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여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함

3. 아울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진행 과정 중 기일이 소요되어 출석 일수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우선 입교를 희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2. (○○학교) 진단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3. (○○학교) 입교신청자 명단 1부.  
 4. (○○학교) 입교신청서 1부.  
 5. (○○학교) 학교장의견서 1부. 끝. ← **요보호대상 학생 신청자만 작성**

○○학교장

수신자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교수학습정보부장),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과(고등학교:특수교육과)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sen.go.kr /비공개(6)



## ❖ [기안문 예시] 꿀맛무지개교실 진출 알림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생 진출내용 안내

### 1. 관련

가.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000(2020.\*\*.\*\*.)

나.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과-000(2020.\*\*.\*\*.) ← 초, 중학교의 경우

나.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000(2020.\*\*.\*\*.) ← 고등학교의 경우

2. 본교 꿀맛무지개교실 입교 학생의 진출로 인한 학적 변동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연번	변경 전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선정영역	변경 후
1	○○학교 0학년 0반				건강장애 (또는 요보호)	△△학교

끝.

○○학교장

수신자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교수학습정보부장),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과(고등학교:특수교육과)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 @sen.go.kr / 비공개(6)



❖ [기안문 예시] **꿀맛무지개교실 퇴교 요청**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학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 꿀맛무지개교실 퇴교 요청

1. 관련

- 가.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000(2020.\*\*.\*\*.)
- 나.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과-000(2020.\*\*.\*\*.) ← 초, 중학교의 경우
- 나.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000(2020.\*\*.\*\*.) ← 고등학교의 경우

2. 본교 재학 중인 다음 학생의 꿀맛무지개교실 퇴교를 요청합니다.

학교명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퇴교사유	퇴교예정일
○○학교				건강 호전으로 학교복귀	20**.**.**. (출석 인정 처리를 원하는 날짜 +1일 로 기재)

끝.

○○학교장

수신자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교수학습정보부장), 초.중등교육과(고등학교:특수교육과)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02-	/전송 02	/ @sen.go.kr /비공개(6)



❖ [학교장 의견서 예시] 요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학교장 의견서

학교장 의견서					
소속		학년		성별	
학생 이름		진단명		진단서 발행일자	
건강 상태	<i>진단 이후 현 건강상태</i>				
치료 상황	<i>수술, 입원, 통원치료 등 최초 발병 일자부터 기재</i>				
출결 및 학교생활	<i>새학년도 시작일부터 끝맺무지개교실 입고 신청일까지의 총 결석일 및 학교생활 현황</i>				
보호자 의 견	<i>보호자의 의견을 요약하여 기재</i>				
년    월    일					
○○학교장(직인생략)					
<b>서울시교육감 귀하</b>					

※ 학부모 상담을 통해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제출

2025 통합교육 업무 지원  
한 권에 담은 통합교육 실행 도움 자료



# 9

## • 장애학생 인권보호





## 9. 장애학생 인권보호



### ❖ 관련 근거

-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①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18.12.18.)

### ❖ 참고자료

- 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서울시교육청, 2026)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서울시교육청, 2026)
- 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교육부, 2025)
- 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도움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 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계획(서울시교육청, 2026)
- ① 학생 생활교육 운영 계획(서울시교육청, 2026)

###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지원 방향

- 인권침해 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학교폭력 유형(따돌림, 언어폭력)을 반영한 단위학교 예방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학교 규칙(학생 생활규정)에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학칙 등을 신설 또는 강화한다.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을 실시한다.
-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관련 연수를 강화한다.
  - 인권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 착탈의 지원 시 유의사항,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 의식, 자기보호 등) 함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장애유형에 따른 수업 및 교내외 교육활동 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시 통합교육 방법, 내용, 교육활동 참여 지원방안, 학습권리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등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학부모-교사(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를 협의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공문을 참고하여 실태점검에 참여한다.
- 장애학생, 교원, 학부모 등이 직접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장애학생 인권보호센터 - 서울시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등)를 안내한다.



###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칙 조항 예시(학생생활교육 규정 내 예시)

항목	내용
특별지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고, 장애학생의 의견진술을 조력하도록 한다.</li> </ul> <p>※ 특수교육전문가: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p>
장애학생 인권 교육 실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학생 대상 장애이해(인권)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li> <li>-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li> <li>-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등 범교과 주제와 연계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다.</li> <li>-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한다.</li> </ul>
장애학생 보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가진 특성(나이, 외모, 인종, 신체조건, 장애, 가족형태,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개인이 가진 고유한 인권을 존중한다.</li> <li>-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의함)</li> </ul> <p>(00학교 생활교육 규정)</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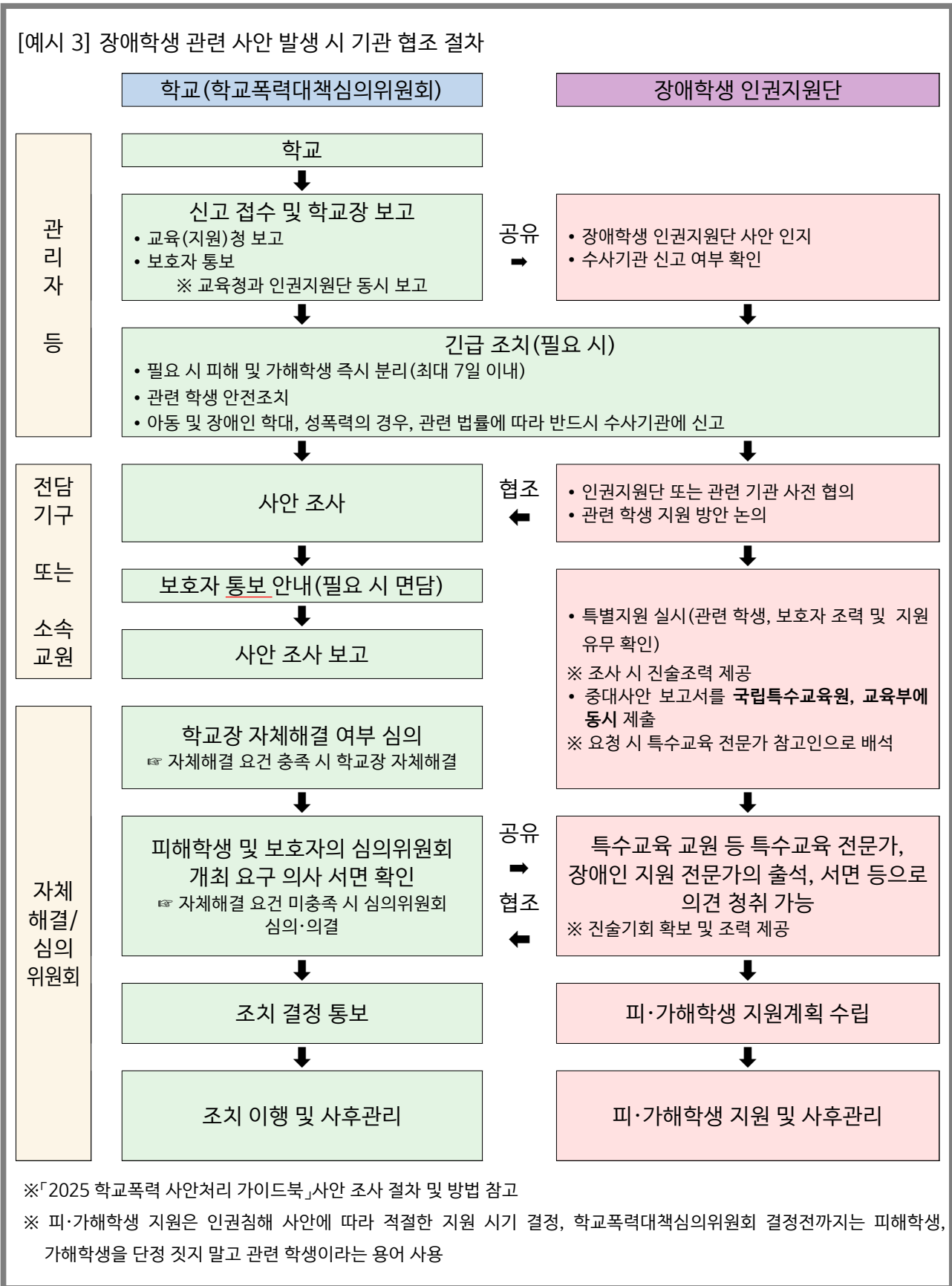
###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규칙 ‘그 밖의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에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예시)

항목	내용
장애유아 권리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의 장 및 교직원은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 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li> </ul> <p>(00유치원 유치원 규칙)</p>
장애유아 인권 교육 실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일상 속 장애이해교육(인권 교육 포함)을 실시한다.</li> <li>- 장애유아 인권보호를 위해 유아 대상 장애이해(인권)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li> <li>- 교직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li> </ul> <p>(00유치원 유치원 규칙)</p>



### ❖ 장애학생 관련 사안 발생 시 학교 내 업무처리 흐름도

[예시 3] 장애학생 관련 사안 발생 시 기관 협조 절차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사안 조사 절차 및 방법 참고

※ 피·가해학생 지원은 인권침해 사안에 따라 적절한 지원 시기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 사용

※ (교육부) 2026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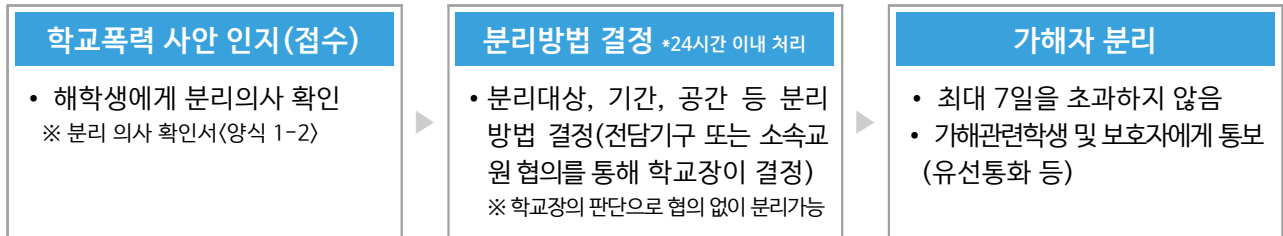




### ❖ 학교폭력 관련 학교 내 사안조사 시 유의사항

1. 사안을 인지 또는 감지하게 된 경우 학교폭력 담당부서에 신고 후, 학교폭력 담당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학생의 안전을 확보한다.

#### [분리절차]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2.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으로 사안조사에 응하게 될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는 학부모나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서 특수교육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인지, 심리, 행동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 특수교육 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한다.

###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특별지원’ 시 학교 준비 사항

1. ‘특별지원’이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인권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원이다.
  - 학교 또는 교육청 담당 부서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사안을 인지·확인할 경우, 사안 발생 학교에 학교 방문 일정을 알리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특별지원’을 받는 학교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사안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한다.

10

##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 10.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유아만 해당)



### ❖ 개념

#### ① 유아학비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의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원아에게 취학 직전 3년간 유아학비를 지원함

#### ②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으로, 유아 학비 외 추가로 발생하는 교육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함

지원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

### ❖ 법적 근거

#### ①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 ❖ 관련 공문

- 2026학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644, 2026. 1.22.)
-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알림(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1038, 2025. 2. 5.)
- 2025학년도 유아학비(외국국적유아, 저소득층, 특수 무상교육비 포함) 알림

### ❖ 특수학급 관련 예산

가) 특수학급운영비: 학급당 300만원+@(2026.4.1.자 학생수에 따른 차등지급)

나) 특수학급 유아교육비: 학급당 9,440천원(특수학급 설치 유치원만 해당)

다)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에듀케어) 운영비: 350만원(특수에듀케어 설치 유치원만 해당)

#### 〈관련공문〉

- 2026학년도 개별교부운영비(특수학급 및 특수학급 유아교육비) 교부기준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13552(2025. 12.30.))



#### 예시자료

- ◆ [기안문]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예산 신청
- ◆ [학부모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학부모 확인서



## ❖ 세부 내용

### 1. 지원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유아특수교육기관: 특수학교 유치원,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유아특수학교

\*\* 일반유치원: 공립유치원(병설, 단설) 일반학급 및 사립유치원 일반학급

### 2. 지원 금액

#### 가. 유아학비(A)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경우에도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포함) 지원대상이므로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및 학부모 사전 안내

####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B)

1) 지원 금액(예산은 매년 공문에 의해 변경 가능)

구분	유아학비(A)	무상교육비(B)	월 지원 상한액(A+B)
공립	15만원(방과후과정비 포함)	월 8만 6천원	최대 23만 6천원
사립	35만원(방과후과정비 포함)	월 33만 4천원	최대 68만 4천원

※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 학부모부담금 소요경비를 신청

2) 지원금 산정: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 일수'에 따름

- 신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해당 유아의 진단평가 의뢰서(공문)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소급지원 가능)

3) 지원금 지급: 각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공문에 의해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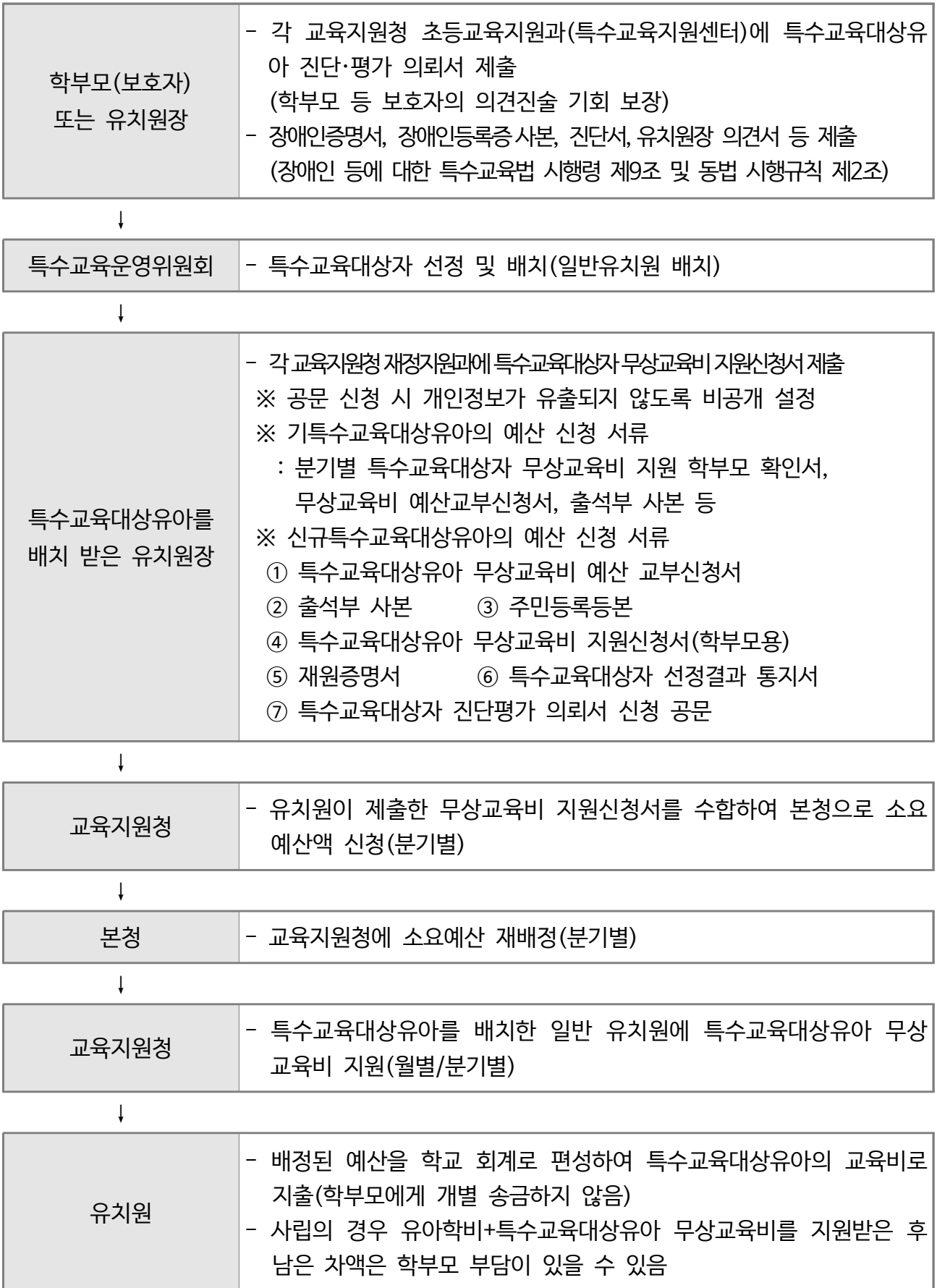
4)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 및 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실제 소요되는 경비(방과후과정 소요경비 포함)

#### ❖ 지원 예시 ❖

- 사립인 ○○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월 40만원인 경우,
  - 사립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상한액범위 내인 월 33만 4천원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해당 유아의 학부모부담금은 6만 6천원만 납부처리
- 공립인 □□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월 7만원인 경우,
  - 공립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상한액범위 내인 월 7만원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해당 유아의 학부모부담금은 면제처리



### 3. 지원 절차





## ❖ [기안문 예시]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예산 신청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교마크)

# ○○유치원



수신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유치원)202○학년도 1분기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예산 신청

1. 관련: 서울○○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000(202○.00.00.)
2. 202○학년도 1분기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예산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대상 유아	생년월일	소속	특수교육대상자선정영역	청구 예산

- 붙임 1. 1분기 출석부 사본(김00)  
 2. 1분기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학부모 확인서  
 3. 202○학년도 1분기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예산 교부 신청서. 끝.

# ○○유치원장

수신자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접수	)
우 03178		/ http://
전화	/전송	/비공개(6)
	/	@sen.go.kr



❖ [학부모 확인서 예시]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학부모 확인서

**202○학년도 1/4분기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학부모 확인서**

유치원명	원아명	금회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202○학년도 1/4분기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를  
\_\_\_\_\_유치원에서 위와 같이 지원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년    월    일

확인자(관계:    ) 성명 \_\_\_\_\_ (인)  
전화(휴대)번호:

※ 학부모 자필로 기재 후 도장 날인 또는 자필 서명

**서울특별시00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모두를 위한 학교교육계획 수립 (학교교육계획에 삽입할 수 있어요)



### 선생님들께

통합교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통합교육계획, 특수학급 운영 계획에 별도로 세워 결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책배리어프리의 취지처럼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적절한 위치를 찾아 통합교육,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교육활동 계획을 한두 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계획 단계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을 포함한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개념

#### ④ 학교 안 정책배리어프리란

학교 안에서 계획 단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장애학생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정책적 차별을 예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와 협력적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 부서 간, 업무 간의 소통 행정, 적극 행정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사업 시행 전 검토항목'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사업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참여 및 지원을 고려(검토)하였습니까?

### ❖ 계획 삽입 예시

#### ④ 학교 교육과정 편성 중점 사항

##### 교육과정 편성 중점

〈삽입〉 → 차. 인권을 존중하며 다문화, 탈북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태도를 기른다.

#### ④ 교내 체육활동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 방법 추가

##### ○○학교 수영 교육 (또는 스케이트 교육 등)

##### 〈삽입〉 → 방침

다. 전문 강사를 각 학급에 배정하고 반별로 강습을 진행하도록 한다. 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추가로 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인성교육 내 장애이해교육 내용 추가**

**협력적 인성교육을 위한 방송교육**

**〈삽입〉 → 연간운영계획**

구분	운영월	내용	담당
학교행사	3월, 7월, 8월, 12월	시업식(3월), 방학식(7월), 종업식(2월)	교장, 교감, 교무
	4월, 5월	개교기념일(4월), 어린이날(5월)	
생활지도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교육(3월, 9월) <b>장애이해교육(4월, 10월)</b> 정보통신 윤리교육(6월)		인성부장 특수교사 과학정보부장
○○학교 뉴스	학교행사 및 학급 뉴스(매월 3째주 금요일)		전교 임원단

**▶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지원 방안 추가**

**○○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삽입〉 → 방침**

다.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참여 방안에 대해 체험학습 담당 부서와 특수교사(통합학급 담임교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지원인력 배치, 지원 방법,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다.

**〈삽입〉 → 답사 방침**

라. 교육장소 내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점자블록 등) 유무를 확인한다.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계획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지원 방안 추가**

**○○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계획**

**〈삽입〉 → 방침**

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참여 방안에 대해 체험학습 담당 부서와 특수교사(통합학급 담임교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지원인력 배치, 지원 방법,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다.

**〈삽입〉 → 답사 방침**

라. 교육장소 내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점자블록 등) 유무를 확인한다.

마. 숙박업체와 숙박업체가 장애인편의시설(객실 또는 침실, 화장실,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 학교안전계획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지원 방안 추가

학생별 대피 상황 시 지원계획

〈삽입〉 →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피 계획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피 지원인력	대피장소	특이사항
1G 임○○	▪ 특수교육실무사(1)	운동장	-
2G 김○○	▪ 담임교사	운동장	- 행동이 느린 편임
3G 고○○	▪ 사회복지무원(1)	운동장	- 휠체어를 이용함
3G 서○○	▪ 특수교사	운동장	- 낯선 상황에서 당황하고 교사의 전체 지시를 따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교사 연수 계획에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 관련 연수 추가

교사 연수 계획

〈삽입〉 → 세부 추진 계획

월	주	연수 주제	담당자	비고
4	1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과학실험안전 연수	과학정보부장	교직원 전체
	2	장애인식개선교육 연수	담당자	
	3	학교폭력예방교육 연수	생활인성교육부장	



# 통합교육 자율 점검 체크리스트



통합교육 운영 시 꼭 챙겨야 할 핵심 내용을 담은 이 '자율점검 체크리스트'가, 선생님의 세심한 학급 운영을 돕고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 I 통합교육 영역

### 1. 통합교육 운영 준비하기

#### 가. 통합교육계획 수립하기

- 통합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조정, 지원인력 배치, 학습보조기기, 교원연수 포함)
-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또는 의견 제출 기회 확보

#### 나. 교육과정 조정하기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고려한 교육과정 내용 조정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 가능)
- 장애 특성에 따른 평가조정 방안 마련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교과별 평가계획에 명시)

#### 다. 교육활동 참여 보장하기

- 축제, 체육대회 등 교내 활동 참여 지원
-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교외 활동 참여 지원
- (필요시)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예산 편성

### 2. 장애공감문화 만들기

#### 라. 장애이해교육 계획하기

- 학교 단위 장애이해교육 계획 수립
- 전체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장애인권교육 포함)
-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마. 인권보호 체계 갖추기

-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마련

### 3. 개별화교육 운영하기

#### 바.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하기

- 매 학년 시작 2주 이내 팀 구성 (신규/전학생은 배치일로부터 2주 이내)
- 팀 구성원 확인: 보호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진로· 직업교육 담당, 관련서비스 담당 등
- 매 학기 학생별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실시
- 교육지원 내용 변경· 종료 또는 재배치 시 팀 협의 거치기



#### 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하기

- 매 학기 시작 30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일반교사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필수 포함 내용 확인
  - 인적사항, 현재학습수행수준
  -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 평가계획,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구체화
  - 지원인력 배치, 치료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 지원
  - 통학비 지원, 정보접근지원

#### 아. 개별화교육 평가하기

- 교과목의 목표-내용-방법-평가 일관성 확인
-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평가 협의
- 매 학기 개별화교육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내부결재 및 통합학급 교사·학생·보호자에게 통보

#### 자. 기타 챙겨야 할 것

- 전학·진학 시 14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일반학급 배치 학생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평가 확인

### 4.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하기

#### 차. 지원인력 운영하기

- 지원인력 운영계획 수립(특수학급 운영계획 또는 통합교육 운영계획 내 포함)
- 지원인력 역할 명시 (교수학습, 개인육구, 적응행동, 방과후, 기타)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구체적 역할 및 지원시간 결정
- 지원인력 연수 계획 및 실시

#### 카. 학습 지원 도구 제공하기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용 교구 지원

#### 타. 통학비 지원하기

- 통학비 지원 계획 수립(특수학급 운영계획 또는 통합교육 운영계획 내 포함)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대상자 선정
- 통학비 신청(교육지원청) 및 지급(대상 학생)

#### 파. 치료지원 제공하기

- 치료지원 계획 수립(특수학급 운영계획 또는 통합교육 운영계획 내 포함)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치료지원 결정
- 학교 일과 이후 시간 진행 확인
- 치료지원제공기록지 학기별 수합·보관



### 5. 교원 역량 강화하기

-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지원
- 관리자 통합교육 연수 관련 이수 확인

### 6. 정당한 편의 제공하기

#### 하. 정보 제공하기

-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학교 정보 제공  
(예: 시각장애-음성지원, 저시력-문자확대 등)

#### 거. 편의시설 제공하기

-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시설 제공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 체크리스트 활용 TIP

- 학기 초 전체 항목을 훑어보며 연간 계획 수립하기
- 월 1회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누락 사항 확인하기
- 동료 교사와 함께 체크하며 서로 놓친 부분 채우기
- 완료한 항목은 날짜를 기록하여 업무 이력 남기기

## II 특수학급 운영 체크리스트

### 1. 학교 교육과정 및 협력

- 학교 전체 교육과정에 우리 학급 운영 계획이 잘 들어갔나요?  
Tip: 매년 2-3월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특수학급 운영 계획 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무부장님(교육과정부장님) 또는 연구부장님께 꼭 파일을 전달해주세요.
- 통합학급 선생님과 아이들 지도(학습/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Tip: 정식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메신저나 짧은 티타임을 통해 소통한 내용으로도 충분합니다.

### 2. 특수학급 운영 계획 수립

- 작년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평가 의견을 올해 계획에 반영하였나요?  
Tip: 통합교육계획 안에 특수학급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해도 좋아요.
- 올해 '서울특수교육'의 주요 강조 사항을 확인하셨나요?  
참고: 공문으로 내려온 「2026 서울특수교육」 기본 계획을 훑어보고 우리 반 계획에 한 줄이라도 반영하면 좋아요.

### 3.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국가 및 시도 교육과정 지침에 맞춰 시수와 편제를 구성했나요?  
참고: 2015/2022 개정교육과정 시수 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제를 다시 한 번 더블체크!
- 수업 참여를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나요?  
Tip: 긍정적 행동지원(PBS)이나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보조공학기기 활용을 고려해보세요.
- 학생 개인의 특성과 흥미, 요구와 필요 등을 고려하였나요?  
Tip: 국어 시간에 '의사소통 기술'을, 사회 시간에 '지역사회 이용'을 가르치는 등 생활기능 중심으로 재구성해보세요.
- 개별화교육계획의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생의 성장을 평가하고 기록하나요?  
참고: 수업 목표(가르친 내용)와 평가 내용(확인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4. 다양한 교육활동

- 현장체험학습의 내용이 학생들의 연령과 흥미, 교육적 필요에 적합한가요?  
Tip: 학생들이 직접 가보고 싶어하는 곳을 투표로 정해보는 것도 좋은 교육활동이 됩니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 계획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Tip: 돌발행동 대처 방안, 휠체어 이동 경로, 화장실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학생의 요구에 맞는 진로직업 교육을 운영하고 있나요?  
참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지역사회 연계 직업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고등학교 현장실습 필수 체크)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침 및 매뉴얼」 참고
-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립했나요?  
Tip: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장실습운영지침에 따라 학교단위 현장실습 운영계획이 수립하고 운영했나요?  
참고: 학교자체 평가 및 피드백 과정을 포함합니다.
-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사전교육(실습목적,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급상황 대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내용 및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나요?  
중요: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 위급상황 대처 등 필수 교육 이수 여부를 꼭 기록해두세요.

### 6. 운영 평가 및 예산 관리

- 특수학급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회를 가졌나요?  
Tip: 거창한 보고서보다는, 교사/학부모/학생 대상의 간단한 설문이나 간담회 계획이면 충분합니다.



## 통합교육 관련 법률



### ▶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 ①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관련: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 ▶ 「초·중등교육법」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 개별화교육계획 / 장애학생 평가조정 / 장애학생 인권보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련: 장애학생 인권보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1. 시각장애
  - 2. 청각장애
  - 3. 지적장애
  - 4. 지체장애
  - 5. 정서·행동장애
  -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7. 의사소통장애
  - 8. 학습장애
  - 9. 건강장애
  - 10. 발달지체
  -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관련: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관련: 개별화교육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 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 개별화교육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 계획 / 개별화교육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련: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 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관련: 특수교육지원인력 직무 계획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 관련: 장애학생 인권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련: 장애학생 인권보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장애학생 평가조정 / 장애학생 인권보호 / 통합교육계획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 장애학생 평가조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련: 통합교육계획 / 특수학급운영계획 / 장애학생 인권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련: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 서울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7조(교육의 실시)

-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개선교육 실시에 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b>지도</b>	<b>정지숙</b>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b>오승근</b>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장
<b>지도</b>	<b>감소영</b>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운영팀 장학관
<b>기획</b>	<b>김선해</b>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운영팀 장학사 <b>정혜정</b>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운영팀 장학사
<b>집필</b>	<b>김동희</b> 서울경운학교 교사 <b>김수빈</b> 서울정인학교 교사 <b>김현주</b> 서울다원학교 교사 <b>박현경</b> 서울휘봉초등학교 교사 <b>이지현</b> 서울금북초등학교 교사 <b>임미원</b> 서울정민학교 교사
<b>개정</b>	<b>정일혜</b> 서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b>이종필</b> 서울봉천초등학교 교사 <b>김민진</b> 서울도솔학교 교사 <b>김근하</b> 독산고등학교 교사
<b>발행일</b> <b>발행처</b>	2026년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후암동 168) <a href="http://www.sen.go.kr">http://www.sen.go.kr</a>

한 권에 담은   
통합교육 실행  
도움 자료  
개정판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